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International Regulatory Changes and
Countermeasures in Fisheries Sector

2015. 11.

한덕훈·조정희·정명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한 덕 훈: 연구총괄, 1~5장

〈연구진〉

조 정 희: 연구자료 조사, 제4장 일부

정 명 화: 제3장 어획증명서 국내이행 관련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윤 상 린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

최 국 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

정 형 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 임 스 박 (라이코스국제법률사무소 변호사)

윤 성 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주무관)

김 보 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주무관)

* 연구자문위원은 산·학·연·정 순임

연구감리자

류 정 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발간사

법학적 의미에서의 해양 분야는 해상법, 해양법, 해양환경법 등 그 다기한 분화를 거쳐 국제법의 한 지류로서 계속 발전해 왔다. 해상법의 경우 해사공법과 해사사법, 해양법도 해양 영토에 관한 법률 및 해양환경법 등 여러 가지 다른 법리와 배경을 다른 법률들로 분화를 거듭하여 왔다. 한편, 수산분야의 국제법률은 상기의 국제해양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여러 이해관계인과 함께 다른 측면의 법리를 고려해야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국가관할권위원의 해양생물다양성 보호 논의에 있어서도 환경보호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에 측면을 주안점으로 고려하되, 이러한 보호 및 사전적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공해상의 어업의 자유의 제약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지에 대하여도 이익형량 내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수산분야 국제법률에 대한 논의의 이해는 해양 분야의 법률에 기초를 두되, 서로 다른 상이한 법익에 대한 고려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적인 어업국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한 필요성이 매우 큼에 반하여 기존 우리나라에서는 수산분야 국제규범에 대한 연구가 단편적이거나 긴급한 사안, 즉, 규제가 현실화되어서 국내 입법이 매우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서둘러서 연구되고 접근되어온 경향이 다소 강하였다.

본 연구는 단편적인 연구라기보다 거시적인 측면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중요한 논점이 될 이슈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가 종료한 이후에도 수산분야의 국제법률을 통섭적으로 바라보면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 국제사회의 논의에 대하여 미리 그 핵심을 파악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FAO 항만국조치협정, 어획증명서 개정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과 자발적 지침(안)에 대한 분석, 어업범죄에 대한 최근 논의 동향은 모두 최근 국제사회에서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는 비단 수산 분야에만 적용되고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연구의 진전에 따라서 수산물 국제무역질서, 국제형사공조체제 등에도 큰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FAO 항만국조치협정은 시장에 진입하기 전 항만에 양륙하는 단계에서부터 불법어획물을 방지함으로써 동 어획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성립된 협정이다. 25개국이 비준하는 경우에 국제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2016년 초 우리나라도 FAO에 동 협정에 대한 비준 기탁서를 제공하였다. 어획증명서에 관한 자발적 지침(안)은 수산물 수출 강국인 노르웨이에 의하여 제안되어 시작된 논의로서 UN, FAO에서 그 논의가 꾸준히 진전되고 있다. 어획증명서는 어획의 정확한 장소를 제공하여 불법어획물이 아닌 경우에만 시장국에 수출될 수 있는 일종의 스크린 작용을 하고 있는 문서이다. 수산물 수출 시에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로서 EU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수산물기구 혹은 각 수출국의 책임 있는 당국에서 이를 발급하고 있다. 만약 추후 자발적인 지침이 FAO차원에서 형성된다면 당장은 시장국인 EU에서 이를 반영하여 변동시키지는 않더라도 점차적으로 개정되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수산물 수출국인 우리나라의 연동되는 대응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 역시 수산물 수입국으로서 수출국에 대하여 어획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동 제도는 우리나라의 연근해에서 불법어획된 어획물이 역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작용할 소지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어업범죄는 기존의 IUU어업행위 만이 아니라 이에 한 발짝 나아간 형사적인 문제, 즉 어선을 이용한 마약밀수, 어선원 노동착취, 조직범죄 등을 모두 묶어서 어업범죄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다. 이는 좀 더 형사적인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접근한 것이나, 공해상 혹은 연안국의 관할권 내에서 이러한 행위 들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편의치적과 관련된 문제점, 명백히 형사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학문적 차원에서 연구를 보다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책임 있는 조업국가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덕훈 전문연구원의 책임 하에 조정희 연구위원, 정명화 전문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는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윤상린 과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최국일 과장,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형진 교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윤성하, 김보미 주무관, 라이코스법률사무소의 박재명 미국변호사가

자문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셨다. 본 원의 류정곤 연구감리위원께서 지속적인 감리와 지도를 통해 본 연구의 질을 높여 주셨고 안정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김세인 연구원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이 연구 보고서가 출판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2015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김 성 귀

목 차

Executive Summary	i
-------------------------	---

제1장 서 론	1
---------------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범위와 내용	3
3. 연구 방법	4
4. 선행연구 검토	5

제2장 수산분야 국제규제 동향 분석	8
---------------------------	---

1. FAO 항만국조치협정	8
2. 어획증명서제도	18
3. 어업범죄	27

제3장 국내의 관련 법제도 및 정책	38
---------------------------	----

1. FAO 항만국조치협정	38
2. 어획증명서	42
3. 어업범죄	56

제4장 국내의 대응 방향	59
---------------------	----

1.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	59
------------------------	----

2. 제도 및 정책적 개선 방향	61
3. 추진 로드맵	6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69

1. 결론	69
2. 정책 제언	71

참 고 문 헌 74

부 록 78

부록 1. 유럽공동체(EU)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 절차 [시행 2014.5.26.] -별지 서식	78
부록 2.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2012.07.10. 개정 -별지 서식	85
부록 3. FAO항만국조치협정 원문	87
부록 4. FAO어획증명제도 개선을 위한 자발적 지침(안)	120

표 목 차

〈표 1-1〉	주요 선행연구 내용과 본 연구의 차별성	6
〈표 2-1〉	FAO항만국조치협정 가입국 현황	10
〈표 2-2〉	어업범죄의 개념 (IUU어업행위와 구별)	29
〈표 2-3〉	선박 등록 상위 35개국 (2014년 1월1일 기준)	31
〈표 3-1〉	담수수산물제품	44
〈표 3-2〉	CCSBT 어획증명제도 요구 서류 및 정보	52
〈표 3-3〉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주요 내용	54
〈표 4-1〉	주요 이슈 향후 추진 일정	68

그림 목 차

〈그림 2-1〉 IUU어업행위와 어업범죄 구분	29
〈그림 2-2〉 전세계 편의치적국가	35
〈그림 3-1〉 한국어선(원양어선 포함)에서 EU로 직접 수출하는 수산 제품 (가공하지 않은 수산물)	47
〈그림 3-2〉 한국에서 가공한 제품(한국산 원료)을 EU로 직접 수출하는 수산제품	47
〈그림 3-3〉 한국에서 가공한 제품(외국산 원료)을 EU로 직접 수출하는 수산제품	49
〈그림 3-4〉 한국산 원료를 제3국에서 가공하여 EU로 직접 수출하는 수산제품	49
〈그림 3-5〉 기관별 업무 구분	50
〈그림 3-6〉 발급 절차	51
〈그림 4-1〉 한국의 어업범죄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방향	65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International Regulatory Changes and Countermeasures in Fisheries Sector

1. Purpose

- The study aims to analyze issues of increasing importance, serving as a basic research material for preparing macroscopic countermeasures for Korea. To achieve this goal, it carried out an analysis on international issues such as FAO Port State Measure Agreement, which is an international agreement to preven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voluntary guidelines for catch certificate and fisheries crime.
- Related laws of Korea are reviewed based on the analysis of FAO Port State Measure Agreement. However, improvements of catch certificate system and fisheries crime have not reached the stage where internationally agreed regulations are produced. Hence, the study can serve as a basic research for studying countermeasures in the future.

2. Methodologies and Feature

1) Methodologies

Features	Major contents	Data collection
Literature review and data survey	- Data analysis on related international laws such as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Analysis on UN Sustainable Fisheries Resolu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data such as FAO and OECD, precedent research papers, online data,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related to fisheries and academic papers	- Related literature -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y

Features	Major contents	Data collection
Expert consultation	- Direction of legal amendments -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and the direction of departments in charge of policy implementation - Necessary measures in the case of law enforcement	-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 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 Academic circles such a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International law professors and lawyers
On-site investigation	- Visit EU and advanced countries where catch certificate system is established and developed and gather information	- Consultation with experts and related public officials

2) Feature

- Although the voluntary guidelines of catch certificate system and fisheries crime have emerged as international issues of importance, there have not been any precedent studies conducted in Korea. This study is the first in Korea to pioneer the research in this increasingly important area.

3. Results

1) Summary

- FAO Port State Measure Agreement basically does not seem to collide with existing laws in Korea.
 - That is, two rounds of amendment for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were conducted to which regulations related to Port State Control Inspection article were supplemented or newly added. (Refer to the article 14 of the same Act)
- Efforts should be made to develop easy-to-use catch certificate system
 - The discussion on amending catch certification aims at combating illegal fishing and removing unnecessary trade barriers, contributing t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 The amended catch certificate system should be presented to exporters in an easy and convenient way, so as not to act as an unnecessary trade barrier
- When Korea adopts catch certificate system in the future, it can be used as a countermeasure against China's illegal fishing activities
 - If illegal fishing products caught by Chinese boats from within Korean EEZ are imported to Korea, the catch certificate system can be used to specifically identify where the fishing activity took place. Then, it could be acted as preemptive filtering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crease of imports of illegal catch.
- Fisheries crime, which can take place in high seas, requires an expanded cooperation of criminal law enforcement with other countries to effectively enforce the law.
 - Therefore, tax evasions which take advantage of tax heaven or flag of convenience ships require information sharing and joint response with related authorities of other countries for effective response
-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renders its advisory opinion for IUU fishing activities, which can be used as judicial grounds for illegal fishing activities conducted by Chinese fishing boats. Hence, Chinese authorities are held accountable for their illegal activities as a flag state for the reasons such as negligence of management

2) Policy contribution

- The study presented necessary improvement measures for domestic system following Korea's signing of FAO Port State Measure Agreement. By doing so, it contributes to the ratification of the agre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smooth implementation system.
- The study also provided concrete analysis on the voluntary guidelines of catch certificate, which is the result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held by FAO Committee on Fishery and UN Sustainable Fisheries Resolution. Based on this, it will help prepare domestic countermeasures in the future.
- It calls the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riminal justice system by analyzing increasing discussion on fisheries crime.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since the fisheries crime has attained a new status after the international response against IUU fishing activities.

3) Expected benefits

- As Korea is one of major exporters of fishery products, the study can be utilized as a base material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r international fishing order
- By analyzing the issues which have not been discussed in Korea, it contributes to the preparation of proper and timely response
- The study will help Korea, a responsible fishing country, to establish policy direction for international fishing order after IUU fishing problems are addressed.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필요성

공해상 어업의 자유는 UN해양법협약의 성립과 UN공해어업협정의 발효 이후 지역수산물관리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의 도입으로 많은 제약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공해상의 어업, 특히 IUU어업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이행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양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항만국검색을 실시하고 있지만, 향후 FAO항만국조치협정에 가입 및 비준시 제도적인 보완과 실시가 필요할 실정이다. 따라서 동 협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상 항만국 검색제도에 대한 추가적 검토를 통하여 향후 항만국조치협정 비준시 추가적 보완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2013년도 제68차 UN 수산물결의안 회의에서 노르웨이는 EU 어획증명서와 이력추적(catch documentation scheme and traceability)에 대한 개선 노력을 FAO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었다.¹⁾ 어획증명서제도는 이를 통하여 어획장소, 어획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되어야 수입국으로 수입될 수 있게 함으로서 IUU어업행위 방지를 위한 시장국 조치의 일환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EU의 어획증명서를 포함하여 각 국가별 지역수산물기구(RFMOs)별로

¹⁾ 제68차 UN수산물결의안 OP 67 (A/68/L/19), p15 참조

OP 67. Welcomes the ongoing work of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on the development of best-practice guidelines for catch documentation schemes and traceability, in accordance with its agreed terms of reference and framework principles;

각기 다양한 어획증명서제도를 수산물 수출국에 요구함으로써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 수출국에게 불필요한 무역장벽(trade barrier)으로 작용한 점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UN수산물협약의 배경이 있었다. 특히 노르웨이는 자국의 전자 어획증명서제도(electronic catch certificates)를 예시하며, 국가별 다양한 어획증명서 제도의 통일화(harmonization)를 주장하였다.

어획증명제도의 개선노력은 IUU어업행위 방지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논의 동향 파악이 필요하고 수산물 주요 수출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조기에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제적으로 규범화의 단계에 돌입하였을 때 그저 따라가는 것보다는 논의의 시작 단계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FAO를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어획증명서 개정의 큰 방향과 개정의 구성요소를 정한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제도를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추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인 논의 내용과 함께 시사점을 파악하여 우리가 대응할 큰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공해상 어업에 대한 IUU어업행위²⁾ 문제는 각국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제적 자발적인 지침의 형성,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있는 조약의 구성과 각국의 비준,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보존관리조치 도입 등으로 국제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각국은 자발적으로 관련 국내법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근거하여 행정적 처벌 및 형사상 처벌까지 부과하는 등 IUU에 대한 폭넓은 규제가 계속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으로는 “어업범죄(fisheries crime)³⁾”이라는 개념의 도입을 주장하여 불법어업행위 이외에도 어업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신매매, 어선원착취, 마약밀매, 조세포탈 등의 행위를 모두 이러한 어업범죄라는 개념으로 구성하여 각국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국내법으로 규제하고

2)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행위)

3) 또는 수산범죄라고 번역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업범죄로 명명할 예정이다.

형사적으로 처벌하자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따라서 어업범죄에 대한 논의 동향, 특히 편의치적선을 이용한 어업범죄의 논의 동향을 분석하여 아직 국제적 규범으로 확립되지는 않았으나 국제적 추세를 분석하고 전망하여 향후 국내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IUU어업행위와 긴밀하게 연관된 국제적인 세 가지의 주요한 이슈를 연구하여 향후 국내적 대응방안의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 자료로서 활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위와 같은 배경과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FAO 항만국조치협정 분석을 통한 국내법 제도 검토, 국제적 어획증명서 개선 논의 동향과 합의 분석, 국제적 어업범죄 논의 동향 분석을 토대로 국내의 거시적 대응 방향 및 향후 상기의 국제적 노력이 구체화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국내적 대응방안의 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즉, 어획증명서 제도 개선 및 어업범죄 분야는 현재 국제법으로 성립된 규범이 도출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 국내 제도 변경안을 본 연구에서 도출하기 보다는 향후 대응방안 연구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와 내용

1) 연구 범위

본 연구과제가 가지는 특성상 수산 관련 국제규제 변화 전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기에는 대상이 되는 법의 범위가 광대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연구의 효율성과 실익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기 FAO항만국조치

협정, FAO의 어획증명서 관련 자발적지침(안), 어업범죄 세 분야로 한정하여 각각의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결과 향후 국내 제도 변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로 삼고자 한다. FAO항만 국조치협정을 제외한 두 개 분야 경우에는 국제적인 논의의 단계가 아직 진행 중인 점도 고려되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국내 법률 개정안 내용 제시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향후 연구의 과제로 남기도록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은 연구의 필요성, 목적, 범위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선행연구를 함께 고찰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의 전체적 방향성을 분명하게 한다.

제2장에서는 현행 수산분야 국제규제의 현황 및 주요내용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세 분야로 나누어 FAO항만국조치협정의 성립과 동향, FAO의 어획증명서 개정을 위한 자발적지침(안), 어업범죄 논의 주요 내용으로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국내 관련법 제도정책을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국내 대응방향 및 업계에 대한 영향을 예상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의 관련 로드맵 및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산법 체계의 정비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 및 자료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1) 문헌 및 자료 조사

문헌조사는 관련 UN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자료, UN수산결의안, FAO, OECD 등 국제회의 자료, 선행 연구보고서, 국내외 온라인자료, 수산 관련 국

내외 법령, 학술논문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⁴⁾

2) 전문가 자문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책 및 연구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각도의 자문을 수행하였다. 정책 전문가로 부터는 관할부서인 해양수산부가 추진해 온 유관 정책에 대한 현황과 추진 시 어려운 점 및 관련 법령을 집행함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실무상의 경험을 중심으로 자문을 받았다. 주로 수산 관련 법제도를 집행하는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 관련 연구기관인 국립수산물과학원, 한국수산물자원관리공단, 부경대학교, 국제법 교수 및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자문을 구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연구기간 동안 4회를 실시하였다.

3) 현장조사

어획증명서제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EU 등 선진국의 관련 법체계에 대한 직접 방문 및 문헌 정보를 습득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FAO의 어획증명서 개정 담당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연락하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내용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였다.

4. 선행연구 검토

UN마약범죄사무소의 ‘어업분야에 있어서 초국가적 범죄(2011)’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IUU행위와 연관된 인신매매, 마약밀매 등의 행위유형들을 어업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각각의 사례를 통해 어업범죄 동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 및 개선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⁴⁾ 학술논문은 FAO항만국조치협정을 제외하면 어획증명서제도와 어업범죄에 대한 국내 연구는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주로 해외의 논문 혹은 자료를 활용하였다.

영국에 소재한 환경 및 불법어업 전문 NGO단체인 환경정의연합(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EJJ)에서 발간한 ‘Lowering the Flag(2010)’ 보고서에서는 편의치적을 이용한 IUU행위와 어업범죄행위에 대한 분석 및 국제적 합의 문서에 의한 어선식별번호 제도를 연구 검토하였다.

위 선행연구들은 일부 IUU사례를 제시하였고 IUU 관련범죄들에 대한 사례 연구에 중심을 둔 연구로서 어업범죄라는 용어를 부각시키고 국제적으로 환기 시킨 의미는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수산분야 전반과 관련된 국제규제의 분석 및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동 연구와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어획증명서제도 관련 자발적지침(안) 및 어업범죄에 대하여 국내의 선행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를 시도한 국내 최초의 보고서라 할 수 있다.

〈표 1-1〉 주요 선행연구 내용과 본 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 내용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 과제명: “어업분야에 있어서 초국가적 범죄-인신매매, 마약밀수 중심으로” (2011, UN마약범죄사무소) - 각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어업행위와 연관된 범죄행위를 어업범죄로 구성 연구	- 문헌조사, 통계분석 - 해외사례 비교연구	- IUU행위와 연관된 인신매매, 마약밀매 동향 - 환경범죄, 해적행위, 부패행위 - 관련 제도 개선 권고 사항
2	- 과제명: “Lowering the Flag”(2010,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 편의치적을 이용한 IUU행위와 어업범죄행위 분석 - 조업선, 운반선에 있어 편의치적문제, 국제적 합의문서에 의한 어선식별번호 제도 연구	- 문헌조사, 통계분석 - 해외사례 비교연구	- 편의치적과 IUU행위 - 편의치적선에 있어서 어선원 착취 - 개별 IUU 사례 연구

〈표 1-1〉 주요 선행연구 내용과 본 연구의 차별성(계속)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차별성	- 현재까지 국내에는 어업 범죄 문제, 기국책임에 관한 FAO자발적 지침, 국제적 어획증명제도를 정면으로 다룬 연구가 전무한 실정임. - 현재 국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 제도 관련 논의 내용과 개선노력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제적인 흐름에 적극 대응하는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음 - 더 나아가 우리 수산물 수출업계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시사점 도출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문헌조사, 통계분석 - 해외사례 비교연구 - 성과분석 - 전문가 TF 활용연구 - 제도 분석	- FAO항만국조치협정, 어업범죄의 문제, 기국책임에 관한 FAO자발적 이행지침, UN 및 FAO 등 국제기구의 어획증명서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 분석 - 주요국의 어획증명제도 현황 파악 - 우리나라 관련 제도 및 보완 필요사항 분석 - 국내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 결론 및 정책제언

제2장 수산분야 국제규제 동향 분석

본 장에서는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의 주요 내용으로서 본 연구의 대상인 FAO 항만국조치협정의 내용과 경과, 어획증명서제도 논의 동향 및 자발적지침의 내용, 어업범죄 논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1. FAO 항만국조치협정

1) 개념

FAO 항만국조치협정(FAO Port State Measure Agreement)⁵⁾은 항만에 입항하려는 외국어선에 대하여 입항 전 허가를 얻고 입항하도록 하고, 입항 후에는 항만국 검색관에 의하여 검색한 결과 불법어업 관련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일체의 항만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정이다. 동 협정 성립에 대한 논의는 IUU 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하였다. 즉, 해상에서 어획된 불법어획물이 육지로 불법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의 첫 단계이며 시작점인 ‘항만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결국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책임범위를 해당 선박의 기국에서 해당 선박이 입항하는 항만국까지 확대하는 노력이 FAO 항만국조치협정의 성립을 가져왔다.⁶⁾

5) 영어원문은 아래와 같다. FAO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6) 원래 항만국조치(port state measure)는 상선의 운항과 관련하여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선박의 안전 도모, 선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작한 국제규범들에서 그 개념이 발전되었다. 1982년 항만국통제에 관한 파리 양해각서(1982 PAR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파리 MOU’), 1993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항만국통제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in the Asia-Pacific Region, ‘Tokyo MOU’) 참조

2) 추진배경 및 경과

국제적으로 IUU어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수행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 없이 IUU어업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가 여전하다.⁷⁾ 즉, 조업국은 국내 법규 개정 및 집행으로,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S)는 보존 관리조치의 지속적인 개정과 소속 회원국의 컨센서스 유도를 통하여 IUU어업 행위에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조치들이 모두 IUU대응수단으로서 중요성이 인식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논의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국제적으로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즉, 이러한 통제 수단만으로는 어선들이 IUU어업행위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지속적으로 선적을 변경하여 조업활동을 유지하고, 지역수산물관리기구는 각자 가지는 관할 수역에 대하여만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비판이 되어 왔다. 즉, IUU어업행위 대응에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2005년 제26차 FAO수산위원회(FAO Committee on Fisheries; COFI)에서는 최저 단계 수준의 항만국 통제 모델을 채택하였다. 2007년 제27차 FAO 수산위원회에서는 항만국 통제 모델과 IUU 국제행동계획을 기본으로 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문안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였다. 이후 2008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의 4차례 기술자문회의를 통해 협정 세부 문안을 도출하였다. 동 문안에 대하여 2009년 11월 제36차 FAO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얻고 FAO항만국협정은 성립되었다. 동 협정은 25개국이 비준, 수락, 가입하면 발효한다.

동 협정은 2015년 10월 현재 13개국이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완료하고 있다. 즉, 미얀마, 스리랑카, EU, 노르웨이, 칠레, 우루과이, 아이슬란드, 세이셸, 오만, 가봉, 뉴질랜드, 모잠비크 등이다. 2014년 6월에 개최된 제31차 FAO수산위원회에서 뉴질랜드는 비준 완료를 통지하였다. 호주는 2015년 7월 비준 완료하였고, 미국은 2009년 11월 가입선언을 한 이후 현재 FAO 항만국조치협정을 상원에서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불법어업 감시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영국 소재 NGO인 환경정의재단(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EJF)은 매년 전세계 수산물 어획량의 10~30% (100~235억불)가 IUU어업으로 어획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EU, 미국,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WTO수산보조금 협정 논의에서도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주창하는 국가들⁸⁾이 동 협정에 대한 가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에서 보듯이 동 협정에 대한 가입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25개국에 비준 승인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서명 국가들이 비준절차를 마무리한다면 동 협정이 발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만, 중국 등의 주요 조업국은 가입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이슬란드는 가입 및 비준을 완료한 상황이다.

〈표 2-1〉 FAO항만국조치협정 가입국 현황

참가국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
가나	2010.10.28				
가봉	2010.04.26		2013.11.15		
노르웨이	2009.11.22	2011.07.20			
뉴질랜드	2009.12.15	2014.02.21			
러시아	2010.04.29				
앙골라	2009.11.22				
오스트레일리아	2010.04.27	2015.07.20			
모잠비크	2010.11.04	2014.08.19			
미국	2009.11.22				
미얀마					2010.11.22
베냉	2010.09.28				
브라질	2009.11.22				
사모아	2009.11.22				
스리랑카					2011.01.20
시에라리온	2009.11.23				
세이셸					2013.01.19
아이슬란드	2009.11.22	2015.06.02			

⁸⁾ Fish Friends Group(“FFG”)은 수산보조금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동시에 무역질서가 왜곡되므로 이를 제한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진 국가들을 지칭하는 비공식 용어이며, FFG에는 브라질, 뉴질랜드, 호주, 칠레, 에콰도르, 필리핀, 아이슬란드, 페루, 아르헨티나, 미국, 파키스탄, 노르웨이, 콜롬비아 11개국이 포함됨.

〈표 2-1〉 FAO항만국조치협정 가입국 현황(계속)

참가국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
오만			2013.08.01		
인도네시아	2009.11.22				
우루과이	2009.11.22	2013.02.28			
칠레	2009.11.22	2012.08.28			
캐나다	2010.11.19				
케냐	2010.11.19				
터키	2010.11.09				
프랑스	2010.11.19				
페루	2010.03.03				
EU	2009.11.22			2011.07.07	

자료 : FAO 자료 인용 (2015.10.28.일자)

3) 주요 내용

FAO 항만국조치협정은 입항을 요구하는 타국어선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항만을 사전에 지정하고 사전에 입항허가서를 제출하여 허락 여부에 따라 입항하게 한다. 또한 적절한 자격을 갖춘 검색관에 의하여 항만에 입항 후 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검색 후 명백한 IUU어업의 증거가 있는 경우 검색국은 즉시 기국, 필요시 관련국, 지역수산물관리기구, 국제기구 및 선장의 국적국에도 조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해당 선박에 대하여 어획물 양륙, 환적, 포장, 가공, 연료 물자 공급, 정비 등 일체의 항만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

(1) 전체구성

FAO 항만국조치협정은 본문(10부 37조) 및 부속서(A, B, C, D, E)로 구성된다.

(2) IUU 어업의 정의(제1조e항)

FAO 항만국조치협정 제1조에서는 IUU어업의 정의를 2001년 FAO에서 채택된

‘IUU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이하 IPOA-IUU)상의 정의를 따른다라고 규정한다.⁹⁾ 다음의 표 내용은 IPOA-IUU상 IUU 정의규정의 내용이다.

3.1 Illegal fishing refers to activities:
3.1.1 conducted by national or foreign vessels in wa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a State, without the permission of that State, or in contravention of its laws and regulations;
3.1.2 conducted by vessels flying the flag of States that are parties to a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but operate in contravention of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that organization and by which the States are bound, or relevant provisions of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or
3.1.3 in violation of national laws or international obligations, including those undertaken by cooperating States to a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3.2 Unreported fishing refers to fishing activities:
3.2.1 which have not been reported, or have been misreported, to the relevant national authority, in contravention of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r

9) 한편, 원양산업발전법 (법률제13001호, 2015. 1.6., 일부개정) 제2조에서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2. "불법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한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자국 또는 외국 선박이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법규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나. 국제수산기구의 가입국 선박이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존관리조치 또는 관련 국제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다. 국제수산기구에 협력하는 국가를 포함하여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 또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13. "비보고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한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를 위반하여 관계 당국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
 나.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로서 해당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

14. "비규제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선박, 비가입국 또는 실질적인 비가입국의 국적선이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벗어나게 행동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나.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수역이나 어족자원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른 해양 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따르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어업활동

- 3.2.2 undertaken in the area of competence of a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which have not been reported or have been misreported, in contravention of the reporting procedures of that organization.
- 3.3 Unregulated fishing refers to fishing activities:
- 3.3.1 in the area of application of a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that are conducted by vessels without nationality, or by those flying the flag of a State not party to that organization, or by a fishing entity, in a manner that is not consistent with or contravenes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of that organization; or
- 3.3.2 in areas or for fish stocks in relation to which there are no applicable conservation or management measures and where such fishing activities are conducted in a manner inconsistent with State responsibilities for the conservation of living marine resources under international law.
- 3.4 Notwithstanding paragraph 3.3, certain unregulated fishing may take place in a manner which is not in violation of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and may not require the application of measures envisaged under t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IPOA).

(3) 정의 및 적용 범위 (제1조)

“어류”(fish)를 “해양생물의 모든 종”(all species of living marine resources)으로 정의하고 있다.(동조 제b호) 따라서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산동식물을 모두 포함하며, 개념적으로는 해양미생물(플랑크톤), 해양유전자원 등도 포함 당해 어류의 개념에 포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어류”의 개념이 일반적인 개념보다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4) 협정의 적용대상 (제3조)

IMO 항만국협정은 상선(merchant ship)을 대상으로 함에 반하여, FAO항만국조치협정은 ‘입항을 요구하는 타국어선’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생계를 위한 전통적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인접국 선박 및 어류를 적재하지 않은 또는 이전에 하역된 어류만을 적재한 컨테이너 선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시 말하면 자국어선은 기국주의 원칙에 따라 이미 각국이 관할권을 가지고 관리 및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동 협정으로 항만국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자국 관할 수역 내에서만 조업하는 자국민의 용선에 대하여는 동 협정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 ("may"로 표현됨)

(5) 항만 지정(제7조)

항만국은 동 협정에 근거하여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항만을 지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입항할 수 있는 항만 리스트를 FAO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항만 접근에 대한 사전 요청(제8조)

항만국은 입항 허가 전에 해당 선박에 대해 ‘사전통지서’ 제출을 요청하되 해당 선박의 통지서 작성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7) 입항허가 또는 금지(제9조)

항만국은 사전통지서를 바탕으로 입항 여부를 결정하여 결과를 해당 선박에 통보하며 해당 선박은 입항 시 관련 당국에 입항 허가서를 제출한다.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에서 관리하는 IUU어선 목록에 등재된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을 거부한다.

(8) 항만 사용(제11조)

IUU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입항은 허용하였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체의 항만 서비스(양륙, 환적, 연료 공급 등)의 사용을 거부한다.

가. 기국이 발급한 유효하고 적용가능한 허가 미보유

나. 연안국 관할권에서 요구되는 유효하고 적용가능한 허가 미보유

다. 해당 선박의 선상 어획물이 연안국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어획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입수한 경우

- 라. 기국이 선상 어획물에 대한 합법성 입증에 실패한 경우
- 마. 기타 IUU어업에 가담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즉, 관련 보존관리조치에 부합하게 행동했거나, 해당 선박이 운반선으로부터 인력·장비·연료 등을 공급받은 시점에서 RFMO의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

(9) 검색 실시(제13조)

동 협정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갖춘 검색관에 의해 검색을 실시해야 한다. 회원국은 다음 사항의 관련 의무를 부담한다.

즉, 사전절차로 검색 전 선주에게 검색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검색의 대상은 선상 어류, 어구 및 장비, 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 서류 또는 기록물이다. 선장은 검색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요구받은 자료, 문서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을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검색관은 불필요한 선상 잔류 및 절차 지연 방지에 노력하고, 어류에 품질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선박의 기국과 적절한 합의가 있는 경우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검색에 기국을 초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10) 검색 후 항만국 조치(제18조)

IUU 어업의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검색 당사국은 즉시 기국에 조치결과를 통지한다. 필요시에는 관련 국가,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 국제기구 및 선장의 국적국에도 항만국조치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검색 후 문제가 되는 해당 선박에 대해서 어획물의 양륙, 환적, 포장, 가공, 연료 및 물자공급, 정비, 드라이도킹(drydocking) 등 일체의 항만 서비스 사용을 거부한다. 다만, 선원의 안전·건강 및 선박 안전과 관련된 필수적 항구서비스 사용은 예외로 한다.

(11) 항만국 구제절차 통보(제19조)

항만국의 불법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와 보상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존재한다. 단, 선주 등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기국의 역할(제20조)

자국 선박에 대한 검색이 실시되는 경우 기국은 항만국에 대하여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국 선박이 IUU어업 또는 관련 활동에 개입하였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타국 항구에 입항 요청 또는 입항 중인 경우, 기국은 적절한 경우, 항만국의 선박 검색 및 조치 시행을 항만국에 요청해야 한다.

또한 동 협정을 준수하고 있는 국가의 항구에서 어류의 양륙, 전재, 가공 및 기타 서비스 사용이 장려된다. 항만국 검색 후 기국인 당사국이 자국 선박의 IUU 어업 또는 관련 활동에 가담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는 검색 결과보고서를 수취하는 경우, 기국은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기국의 법령에 따른 이행조치를 발동하며, 기국으로서 취한 조치를, 기국으로서의 능력범위 안에서, 관련 항만국, 기타 관련국, 지역수산물관리기구 및 FAO에 보고해야 한다.

(13) 비준 시 부담 및 의무

동 협정 가입 시 타국인 항만국에 입항 요청을 하거나 또는 이미 입항 중인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대해 조사 의무 및 조치 의무사항이 발생한다.

(14) 발효요건(제29조)

항만국 조치 협정은 25번째 국가가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지 30일 이후 발효된다.

(15) 유보와 예외(제29조)

본 협정에 대해 유보 또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특이한 점을 가진다.

4) 시사점

FAO항만국조치협정 제1조는 “어류”(fish)를 “해양생물의 모든 종”(all species of living marine resources)으로 정의하고 있다.(동조 제b호) 반면, 원양산업발전법은 원양어업을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어(동법 제2조)¹⁰⁾ FAO항만국조치협정의 적용대상과 원양산업발전법간 적용대상의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FAO 항만국조치협정 제1조 제c호 어업(fishing)의 정의규정에는 어로어업을 기술하고 있는데,¹¹⁾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면 협정 제1조 제b호상 어류는 대부분 수산동식물을 의미할 것으로 파악되지만, 개념자체로 광범위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 국내법령인 원양산업발전법상 적용 대상과의 조화를 위하여 동 협정 제1조 제b호의 어류를 수산동식물에 한한다 라고 해석한 선언을 조약 비준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법률 제13269호, 2015.3.27. 일부개정)(시행 2015.9.28.)에는 수산관련법 중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¹²⁾

10)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의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어업”이란 어류의 탐색, 유인, 위치 파악, 어획, 채포, 수확 또는 어류의 유인, 위치 파악, 어획, 채포 또는 수확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활동을 의미한다(협정 제1조 제c호). “fishing” means searching for, attracting, locating, catching, taking or harvesting fish or any activity which can reasonably be expected to result in the attracting, locating, catching, taking or harvesting of fish;

1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수산생물”이란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을 말한다.

2.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정액

동법에 따르면 수산동물은 어류, 패류, 갑각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그 정액 또는 알을 의미하고,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체동물, 극피동물, 척색동물, 개불류, 양서류 등까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동법에 따르면 수산식물은 해조류 및 그 포자, 해산종자식품(동법 시행령)을 포괄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FAO 항만국조치협정과의 어류 개념 차이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의 수산동식물에 대한 정의 조항을 참조하여 원양산업발전법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

2. 어획증명서제도

1) 개념

어획증명서제도(Catch Document System)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외국의 법률로 요구하거나 어획된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의 보존관리조치로 요구되는 서류로서 수출되는 수산물의 어획장소를 포함한 각종 관련 정보를 담은 서류이다. 어획증명서가 없이는 당해 수입국에서 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회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이다. 한편, 연안 어획 어종 경우는 기국, 공해상 어획 어종인 경우 기국 혹은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가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에는 어선 정보, 어획장소, 시간 등 어획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다른 불법조업 감시장치인 조업

(精液) 또는 알을 말한다.

3. "수산식물"이란 살아 있는 해조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포자(孢子)를 말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조(수산생물의 범위) 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20>

1.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2.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3.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4. 갯지렁이류 · 개불류 · 양서류 · 자라류 · 고래류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산종자식물(海産種子植物)을 말한다. <신설 2012.7.20.> [제목개정 2012.7.20]

감시시스템(Vessel Monitoring System)이나 조업일지와 교차하여 어획보고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어획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는 EU가 대표적이다. EU는 EU 회원국 역내로 반입되는 모든 수산 제품에 대하여 수출국 혹은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s)가 발급하는 EC 어획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한다. 그 법적 근거는 EU IUU통제법(Council Regulation, EC 1005/2008)이다.¹³⁾

2) 논의 배경 및 경과

2013년도 UN수산물결의안 회의에서는 어획증명서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촉구하였다. 이어서 2014년 6월 제31차 FAO수산물위원회는 FAO가 어획증명서제도 개정 노력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어획증명서 관련지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관련 전문가 워크숍 (이하 “FAO 전문가워크숍”)이 열리게 되었고, 당해 회의에서는 그 결과물로서 어획증명서제도에 관한 자발적 지침(Voluntary guideline for catch documentation schemes) 초안을 도출하였다.

동 지침은 향후 2016년 상반기에 열릴 제15차 수산물무역소위원회(COFI Sub-Committee on Fish Trade (COFI-FT))의 검토를 거쳐 동 지침의 최종 채택을 위하여 2016년 제32차 FAO수산물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¹⁴⁾

¹³⁾ COUNCIL REGULATION (EC) No 1005/2008 of 29 September 2008 establishing a Community system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mending Regulations (EEC) No 2847/93, (EC) No 1936/2001 and (EC) No 601/2004 and repealing Regulations (EC) No 1093/94 and (EC) No 1447/1999

¹⁴⁾ 한편, 2016년 2월 22일-26일까지 모로코 아가달에서 개최되었던 제15차 수산물무역소위원회에서는 현 어획증명서에 관한 자발적 지침의 내용이 원래 제31차 FAO수산물위원회에서 위임(mandate)한 내용보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이 노르웨이, 미국 등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이에 회원국 다수의 찬성으로 2016년 4월 18일 로마에서 개최될 회원국의 기술 협의(technical consultation)의 대상으로 노르웨이가 제안한 보다 단순한 형태의 자발적 지침(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어획증명서에 대한 전문가 협의의 내용이 어획증명서 개정 노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이는 향후의 동 개정 노력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2015년 7월 전문가 협의 결과물인 자발적 지침(안)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로 하였다.

3) FAO어획증명서 자발적지침(안) 주요내용

어획증명서 자발적 지침은 전문, 목적과 범위, 목표, 정의, 원칙, 원칙의 적용, 개도국의 특별요건, 권고적 기준 및 작용, 데이터 요건 및 형태를 담고 있다.¹⁵⁾

FAO전문가 워크샵에서는 각국에 현재 존재하는 어획증명서 체제와 그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어획증명의 통일화(harmonization)를 도출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및 논의 범위를 어획물, 어획가공물이 국제거래 되는 경우 관련 무역증명서, 양륙 시 어획증명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자어획증명서 시스템은 오류를 줄이고, 문서제출 등 흐름을 촉진하고, 정보를 요구하는 조건에 있어서 보다 더 유연성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여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¹⁶⁾

본 자발적지침은 어로어업(wild capture fisheries), 즉 내수면 및 해면 어획어업에 둘 다 적용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¹⁷⁾ 또한 IUU어획행위를 방지하고 현존하는 국제적 보존관리조치에 부합되는 어획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데 있다고 언급하였다.¹⁸⁾

(1) 전문(Preamble)

FAO수산위원회(COFI)는 차기 회의인 2016년 제32차 회의에서 채택을 목표로 하여 현재 일부국가, 국제기구, 지역수산기구 등에서 이미 존재하는 어획증명서제도(CDS)를 참조하여 당해 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

어획증명서제도가 IUU어획행위의 방지에 기여하고 어획된 어류의 원산지를 식별할 수 있는 효과적 매카니즘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어획증명서제도가 관련 국가, 지역, 국제적인 보존관리조치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어획

¹⁵⁾ 본장에서 기술할 어획증명서제도에 관한 자발적지침에 대한 내용 분석은 지난 2015년 6월에 로마에서 열렸던 어획증명서 관련 전문가 워크샵의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Report of the Expert Consultation on Catch Documentation Schemes (CDS), Rome, 21-24 July 2015 (FIPM/R1120 (En)), ISSN 2070-6987, <http://www.fao.org/3/a-i5063e.pdf> (2015.11.23.최종검색)

¹⁶⁾ 전계 결과보고서 3페이지 참조

¹⁷⁾ 전계 결과보고서 4페이지 참조

¹⁸⁾ 전계 결과보고서 11페이지 참조

되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을 인식한다.

(2) 목적과 범위

당해 지침(guideline)은 자발적이다. 당해 지침의 목적은 각 국가,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GOs))와 이해관계인에게 야생어획 어류(wild capture fisheries)의 어획증명서 관련한 개발, 이행, 조사, 통일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당해 지침의 대상 범위는 국가에 의하여 양륙되거나 무역거래의 대상이 되는 어획증명서 구비가 요구되는 야생어획어류와 그 어류가공품들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개발도상국과 소규모어업의 경우 특별한 고려를 제공하고 있다.

(3) 목표

당해 지침의 목적은 각국 및 정부간기구가 어획증명서제도를 개발하고 조사, 통일화,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 권고사항 및 기준, 기능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4) 정의

가. 어획증명서 서류제도(catch documentation scheme: CDS)

어획증명서제도는 어획 시부터 양육 및 공급체인을 통하여 어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어획증명서제도의 목적은 IUU어업행위로 어획된 어류 및 어류가공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여 IUU어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나. 어획증명서(catch certificate)

어획증명서는 본 지침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데이터를 포함한 어획 및 양육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공식문서이다.

다. 무역증명서(trade certificate)

어류 및 어류가공품에 대한 정보를 담은 공식문서이다. 본 지침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데이터를 담고 있으며 가공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을 수 있다.

라. 양륙(landing)

선박으로부터 항구나 자유무역지역의 도크부분(dockside)으로 어류나 가공품을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마. 환적(transshipment)

이전에 양륙된 적 없는 어류나 가공품을 해상 또는 항구에서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어류를 항구에서 한 선박에서 컨테이너선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본 지침의 개념에서는 양륙이 된다.

바. 어선(fishing vessel)

크기에 관계없이 어획, 어획관련활동 목적으로 사용, 시설 장비를 갖추거나 사용될 목적을 가진 선박을 의미한다. 어류가공선, 선용품제공선, 환적선, 운반선을 포함한다. 다만 컨테이너선을 제외한다.

사. 야생에서 어획된 어류(wild capture fisheries)

본 용어는 해면 및 내수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어획된 모든 어류를 포함한다.

(5) 원칙

2014년 FAO 수산위원회가 어획증명서 관련 지침개발을 위하여 제시한 6가지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¹⁹⁾

¹⁹⁾ 전제자료 참조

첫째, 관련되는 국제법의 조항과의 합치성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relevant international law)
 둘째,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지 않을 것 (not create unnecessary barriers to trade)
 셋째, 동등성(equivalence)
 넷째, 위험기반(risk-based)
 다섯째, 신뢰가능하고, 간단하며 분명하고 투명성을 유지할 것 (reliable, simple, clear and transparent)
 여섯째, 가능한 한도에서 전자적일 것 (electronic, if possible)

동 지침은 위에서 FAO 수산위원회에서 제시한 상기 6가지 원칙에 2가지 원칙을 더 추가하여 작성되었다.

- 공급 물류상에서 어류와 어류가공품의 이력추적가능성(traceability)
- 어획부터 시장까지 공급 물류상에 관련된 모든 국가의 긴밀한 협력(close cooperation between all states involved in the supply chain from catch to market)

마지막으로 제시한 원칙에서 보이듯이 긴밀한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각 지역 수산관리기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어획증명서제도의 개혁 및 상호 간 통일화를 위하여 향후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6) 원칙의 적용

어획증명서의 범위와 요구사항은 IUU어업행위가 어족자원과 합법적인 시장 행위에 미치는 위험 및 IUU어획물이 시장에 들어오는 위험에 비례하여 변동될 수 있다.

전자어획증명서는 위조의 위험을 줄이고 정보 제공에 있어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어획증명서는 문서 내에 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고 사용자 친화적이 되어야 한다.²⁰⁾ 또한 오직 관련성이 있으며, 필요하고, 이미 사용가능하며, 확인 가능한 정보만을 포함해야 한다.

²⁰⁾ The certificate should be user-friendly, simple and clear so as to facilitate the inclusion of correct information in the document. 동 결과보고서 13페이지 참조

(7) 개도국 특별 요건

개발도상국이 본 지침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능력(capacity) 부분을 다른 국가에서는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고 본 지침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특히 어획증명서의 전자적 발행과 관련하여, 각 국가와 국제기구는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권고된다. 이에는 재정적, 기술적 도움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이 포함된다.

(8) 권고적 기준 및 작용

가. 모니터링 기준과의 연동

어획증명서제도는 어획감시제도(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MCS) 및 다른 정보 즉, 조업일지(logbook), 선박감시시스템(Vessel Monitoring System: VMS), 옵저버기록(observer data) 등에 의하여 지원되어야 한다.

어획증명서시스템에 참여하는 어선은 기국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는, 연안국에 의하여 허가되어야 한다.

나. 전자어획증명서(e-CDS)

중앙집중적인 전자화가 되어야 한다. 모든 어획 및 무역증명서의 발행 유효화, 진위확인의 시점에서 작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어획증명서 관련 정보의 저장소로서 역할도 해야 한다. 공급물류체인이 이루어지는 전 기간 동안 사용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 접근이 쉽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다. 데이터 입력 및 진위 확인

어획증명서제도는 데이터 입력 및 진위확인과 관련된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여야 한다. 즉, 업계에서 먼저 모든 관련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어획증명서 제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당해 데이터는 결국 관계당국의 진위확인을 거치게 된다. 또한 가능한 범위에서 종이 사용, 데이터의 반복적인 입력은 피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라. 전자어획증명서의 기능 및 기능성

전자어획증명서 시스템은 유연하고 사용자 편리(flexible and user-friendly)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가져야 한다. 스캔한 문서(상업전적서 등) 등의 문서를 업로드 시키거나 어획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마. 데이터 기밀유지 및 보호

어획증명서제도는 상업적 정보 및 국가적 차원의 민감성을 가지는 정보에 대하여는 최고 수준의 보호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허가받지 않고 어획정보에 접근하는 경우에 대비하고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바. 어획증명서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

어획증명서제도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어획하거나 어획물 무역에 관여하는 국가를 선별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비참여국들도 자발적으로 어획증명서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긴밀한 협조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9) 데이터 요건 및 형태

어획증명서에 포함되는 데이터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 어획증명서:

- 유일하고 안전한 문서번호
- 책임 있는 당국의 식별 및 연락번호
- 어선식별
- 어획일자

- 어류에 관한 정보(어종, 어장, 생산형태, 무게(kg))
- 세부적 양륙사항(항구/장소, 환적)

나. 무역증명서

- 유일하고 안전한 번호
- 이전 무역증명서 번호
- 어획증명서 번호
- 수출일자
- 수출업자 연락처
- 수출되는 수산가공품 정보 등

4) 시사점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이하 “CITES”)은 생존 및 사망한 동·식물과 그 파생물에 대한 상업적, 비상업적 국제거래를 규제한다.²¹⁾ CITES의 규제시스템은 허가(Permit), 인증서(Certificate)를 포함하며, 회원국들이 동 협약상의 의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CITES는 최근 이러한 허가시스템을 전자화하여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시스템과 연결하여 운영하고 있다.²²⁾ FAO 워크숍에서는 이러한 CITES의 사례를 향후 전자어획증명서 개발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논의되었다.

현재 EU 등 시장국과 ICCAT, CCSBT, CCAMLR 등 지역수산물관리기구들에

21) 동 협약의 부속서 1은 상업적 목적에 의한 국제거래 금지를 규정하고, 학술연구목적으로 거래 시에는 양국정부의 수출입 허가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부속서 2는 국제거래를 엄격히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될 위험이 높은 종에 대한 상업적 목적의 국제거래 시 수출국 정부의 수출허가증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3은 당사국이 자국 내의 특정한 동식물을 지정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22) Juan Carlos Vasquez (CITES Secretariat), CITES Electronic Permitting Systems: Ensuring Sustainable, Legal and Traceable Wildlife Trade, Global Trade Facilitation Conference, Geneva, 2011

서 각기 다른 형태의 어획증명서를 요구하며, 종이 형식으로 된 어획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자발적지침(안)이 제시하는 대로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쉽고, 명확한 전자화된 어획증명서시스템으로 개정된다면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국제무역상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사용자 편의에 맞춘 단순하고 조작하기 쉬운 시스템이여야 선상에서 조업 후 이루어지는 조업일지와 연동되어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입력하기 어렵고 사용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면 사장이 될 우려도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전자어획증명서를 도입한다면 어획의 장소에 대한 교차확인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며, 전산화된 정보가 축적되어 조업자의 정보 유출은 더 광범위하고 장기적이 될 수 있는 면이 존재한다. 즉, 기업의 영업비밀 측면이 있는 정보를 고스란히 타국에 전자적 정보로 넘겨주는 경우가 될 수 있기에 보관기간 혹은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의 제한 등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2016년도 FAO수산물무역소위를 거쳐서 FAO수산위원회에서 어획증명서 자발적지침을 확정하게 될 경우에는 ‘자발적’이라는 문서의 성격상 바로 국내법 개정의 요구로 들어올 예정은 아니지만 국제적인 흐름이 큰 방향성을 잡게 될 공산이 크다. 또한 이러한 자발적 지침에 따라 EU 등 시장국과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에서 어획증명서의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볼 것이다. 그 경우 주요 수산물 수출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연동되는 국내적 개선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어업범죄

1) 어업범죄의 개념

IUU어업행위는 불법어업 이외에 다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보고·비규제어업행위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그 개념요소에 불법행위만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IUU어업행위는 주로 어업활동과 어선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다.

반면에 어업범죄²³⁾ 혹은 해양생물자원범죄는 불법어업행위와 그로부터 파생하는 연관범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어업행위 이외의 요소를 포함하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를 가진다.

어업범죄의 범위에는 편의치적을 이용한 조세포탈, 어선원 인권유린, 마약밀수, 인신매매, 조직범죄 등 초국가적 조직범죄(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등을 포괄한다.²⁴⁾

2) 논의배경 및 경과

IUU 어업행위가 조직범죄(organized crime), 초국가조직범죄(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기존의 국제적 어업 관련 거버넌스를 넘어서는 국제사법기관의 공조 참여 및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현재 어업범죄에 대한 논의 및 국제적 대처방법의 확산은 주로 국제 모니터링 네트워크(International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Network: IMCS 네트워크)²⁵⁾²⁶⁾ 또는 인터폴²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²⁸⁾ 즉, 국제

²³⁾ 어업범죄는 해양생물자원범죄(Marine Living Resource Crime:MLR-crime)로도 불리운다. 해양생물자원범죄란 개념은 UN마약범죄사무소가 2011년 처음 사용한 것이다. UNODC,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the Fishing Industry”(“어업분야에 있어서 초국가적 범죄- 인신매매, 마약밀수 중심으로”), 2011. 참조

²⁴⁾ 한편, 2014년 10월에 개최되었던 제113차 OECD수산위원회는 노르웨이가 제안한 수산분야 조세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인터폴의 역할 및 개입 논의가 의제로 채택되어 토론되었다. 2016년 4월에 개최될 OECD수산위원회 기간 중 정부, NGO등이 참가하는 조세정책센터 공동세션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²⁵⁾ IMCS 네트워크는 2001년에 조직되었다. 주로 호주, 캐나다, 칠레, 페루 미국, EU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조직이다. 2012년에는 50여 회원국으로 확대되고 현재 FAO수산위원회(COFI)의 공식 옵저버 지위를 얻고 있다. <http://www.imcsnet.org/> 참조

²⁶⁾ IMCS(International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Network는 어업범죄단속과 불법어업감시를 위한 역량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모잠비크에서 개최된 3차례 국제어업집행교육워크숍(Global Fisheries Enforcement Training Workshops(GTETW))을 개최했다. 이를 통하여 전세계의 항만국검색관, 변호사, 해안경비대원, 과학자, 법집행자 등 상호간 네트워크 구성을 촉진하였다. 또한 어업범죄를 대처하기 위한 매핑 소프트웨어, 위성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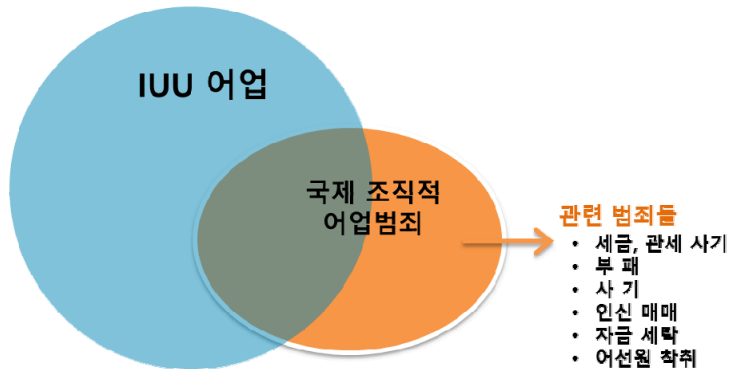
적으로는 현재 IUU어업행위라고 하는 “국제 거버넌스적 대응”에서 어업범죄로 확대하여 “개별국의 형사범죄화 및/또는 처벌 강화” 및 “형사범죄에 대한 국제적 공조”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표 2-2〉 어업범죄의 개념 (IUU어업행위와 구별)

구 분	IUU어업행위	어업범죄
개념범위	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행위	불법어업 및 연관범죄 (조세포탈, 어선원착취, 마약밀수, 인신매매)
행위성질	어업행위	어업행위와 전혀 성질이 다른 행위도 포함
국제적 대응체제	각국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적 대응 중심 (형사범죄화 추진하나, 반드시 각국이 형사범죄화 한 것은 아님)	각국 법제도상 형사범죄화와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해결추진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2-1〉 IUU어업행위와 어업범죄 구분



자료 : Eve de Coning, ‘Transnational organized fisheries crime’ 2013년 인터폴 국제컨퍼런스 발표자료 기반으로 저자 재작성

타, 법의학, 유전학 등 관련 기술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훈련 프로그램도 가동시키고 있다.

27) 인터폴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활동인 프로젝트 스케일 (project scale) 및 관련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interpol.int/Crime-areas/Environmental-crime/Environmental-Compliance-and-Enforcement-Committee/Fisheries-Crime-Working-Group> 참조

28) Henrik Osterblom, Catching Up on Fisheries Crime, Conservation Biology, Volume28. No. 3, 877-879

2014년 제69차 UN수산물결의안에서도 불법어업행위와 이러한 초국가적 조직 범죄의 연관관계를 우려하며 주목하자는 문구가 채택되었다. 또한 UN마약범죄사무소의 2011년도 관련 보고서²⁹⁾를 주목하며 이러한 국제적 현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더 해나가자고 언급하고 있다.³⁰⁾

3) 주요 내용

(1) 편의치적에 의한 불법어업 및 어업범죄의 확산

아래에서는 불법어업을 포함하여 어업범죄가 주로 편의치적이라는 국제해운의 오랜 관습적 제도에 의하여 오히려 더 조장되고 활용되는 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즉, 편의치적국은 기국책임의 원칙상 선박의 기국으로서 어선을 포함한 선박에 대한 관리의 국제법적 책임을 부담하지만,³¹⁾ 통상의 기국과 달리 그 행정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다수여서 결국 기국에 대한 관리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편의치적선들에 대한 관리 허술을 틈타 불법어업행위 혹은 어업범죄가 확산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러한 편의치적제도가 가지는 일정한 장점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업범죄 및 불법어업 방지 차원에서 일정한 제한과 개혁이 필요함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29) 각주 22 UN 마약범죄사무소 보고서 참조

30) 제69차 UN수산물결의안 본문 82. Also notes the concerns about possible connections betwee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illegal fishing in certain regions of the world, and encourages States, including through the appropriate international forums and organizations, to study the causes and methods of and contributing factors to illegal fishing to increas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ose possible connections, and to make the findings publicly available, and in this regard takes note of the study issued by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the fishing industry, bearing in mind the distinct legal regimes and remedies under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illegal fishing and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31) UN해양법협약(UNCLOS) 제94조 기국의 의무 참조 (기국은 선박등록대장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제94조 제2항 (a)호), 선박에 관련된 행정적, 기술적, 사회적 사항과 관련하여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 그 선박의 선장, 사관과 선원에 대한 관할권을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행사한다. (제94조 제2항 (b)호), 또한 자국선에 대하여 해상안전 확보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동조 제3항) 등)

가. 편의치적 개념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이란 세금절약, 저렴한 비용이 드는 선원의 고용, 행정법상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 선박과 진정한 관련(genuine linkage)이 없는 국가에 그 선박을 등록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³²⁾ 전세계 상선의 약 60% 정도가 편의치적 되어있다고 알려져 있다.³³⁾³⁴⁾

〈표 2-3〉 선박 등록 상위 35개국 (2014년 1월1일 기준) (종량: 천톤 기준)

등록국	배척 수	선박 (톤수)	전 세계 점유율	전세계 점유누적	국민 소유 (톤수)	외국인 소유 (톤수)	외국인 점유율
파나마	7,068	355,700	21.2	21	589	355,111	99.83
라이베리아	3,126	205,206	12.2	33	10	205,195	99.99
마셜	2,207	152,339	9.08	43	457	151,882	99.7
홍콩	2,065	138,134	8.24	51	18,637	119,497	86.51
싱가포르	2,318	103,467	6.17	57	41,080	62,387	60.3
그리스	883	77,078	4.60	62	70,499	6,579	8.54
바하마	1,327	74,874	4.47	66	1,104	73,770	98.53
중국	2,802	73,522	4.38	70	73,252	270	0.37
몰라	1,698	72,935	4.35	75	446	72,489	99.39
키프로스	937	32,594	1.94	77	6,131	26,462	81.19
맨 섬	409	23,711	1.41	78	-	23,711	100
이탈리아	719	20,022	1.19	79	18,790	1,232	6.15
영국	658	18,805	1.12	80	8,264	10,541	56.06
노르웨이(NIS)*	531	18,221	1.09	82	15,035	3,187	17.49

³²⁾ 채이식,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3

³³⁾ 선주는 외국선적인 이 선박을 일정 기간 용선하는 형식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금 등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원법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저임금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등 선박 운영에 드는 각종 경비를 줄일 수 있다. 이 수법을 '차터 백(charter back)'이라고 한다. 선박소유·운항 등의 편의(선박에 기인하는 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외국인 선원의 승무의 자유, 낮은 선박구조기준 등)에 의해, 선박소유자의 소재국이 아닌 외국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이와 같은 등록을 '자유등록'(open registry)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편의치적선 [flag of convenience (vessel), 便宜置籍船] (2015년9월30일 최종방문)

³⁴⁾ <http://internationalshipregistries.com/> 참조 (2015.11.23. 최종방문)

〈표 2-3〉 선박 등록 상위 35개국 (2014년 1월1일 기준) (중량: 천톤 기준)(계속)

등록국	배척 수	선박 (톤수)	전 세계 점유율	전세계 점유누적	국민 소유 (톤수)	외국인 소유 (톤수)	외국인 점유율
일본	766	915	1.07	83	17,871	44	0.24
한국	777	16,881	1.01	84	16,266	615	3.64
독일	381	16,380	0.98	85	15,987	393	2.4
인도	702	15,245	0.91	85	14,636	608	3.99
덴마크(DIS)*	381	14,371	0.86	86	13,276	1,095	7.62
인도네시아	1,609	13,846	0.83	87	12,519	1,327	9.58
앤티가바부다	1,207	13,391	0.80	88	1	13,390	100
미국	850	11,848	0.71	89	8,495	3,353	28.3
탄자니아	163	11,663	0.70	89	26	11,637	99.77
버뮤다	145	11,542	0.69	90	210	11,333	98.18
말레이시아	531	9,212	0.55	91	8,668	544	5.91
터키	632	8,891	0.53	91	8,600	291	3.27
네덜란드	926	8,789	0.52	92	6,572	2,217	25.22
프랑스	226	7,577	0.45	92	4,096	3,480	45.93
벨기에	110	6,693	0.40	92	3,733	2,959	44.22
베트남	811	6,652	0.40	93	6,511	141	2.12
러시아	1,410	6,530	0.39	93	5,559	972	14.88
필리핀	413	6,119	0.36	94	1,420	4,698	76.79
태국	339	5,067	0.30	94	4,598	469	9.26
케이맨 제도	158	4,299	0.26	94	—	4,299	100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485	4,273	0.25	94	—	4,273	100
상위 35개국 합계	39,770	1,583,792	94.45	94	403,339	1,180,453	74.53
그 외 국가합계	7,831	93,060	5.55	6	50,629	42,431	45.6
세계 총 합계	47,601	1,676,853	100.00	100	453,969	1,222,884	72.93

자료 : UNCTAD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14, p.44 인용

상기 〈표 2-3〉에서 보듯이 선박등록 상위 35개국 중 전세계 선박 점유율을 누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위 80% 이내의 국가 중 그리스, 중국, 이탈리아,

영국 등을 제외하고 파나마, 라이베리아, 마셜군도, 홍콩 등 상당한 국가의 기선의 외국인 보유비율이 높다. 즉 편의치적 국가이다. 한국의 경우는 선박전체 톤수에서 외국인 소유 톤수는 3.64%를 차지하고 있다. 비교적 자국민 보유비율이 높다고 사료된다.

나. 편의치적제도의 법적 근거

UN해양법협약(UNCLOS) 제9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선박 간에는 진정한 관련(genuine link)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³⁵⁾ 한편, 편의치적 국가가 자국선박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를 하여야 하나, 그러한 관할권 행사를 적절히 할 능력이 없는 것을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제94조 기국의 의무조항에서 고려하여 의무를 감경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편의치적 국가도 또한 다른 기국과 마찬가지로 자국선박의 IUU어업활동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다하지 않은 경우 기국의 상당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³⁶⁾

다. 편의치적제도의 장점

해운사나 원양선사가 편의치적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는 첫째, 거래내역이나 재정 상태를 정부에 보고할 의무를 지지 않는 등 정부의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운항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자국민 승선요건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선주들이 비용이 가장 적은 선원을 선택하여 공급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자국에 선박을 등록한 경우보다 부담해야 하는 세제상의 압박에서 완화할 수 있다는 점, 즉 조세부담의 완화³⁷⁾, 넷째, 편의치적국이 금융기관이 선박 건조와 관련된 담보권 확보를 명확하게 규정한 법률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으로서는 자금회수의 두려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편의치적국을 선호하게 된다. 즉, 금융상의

35) UNCLOS Article 91 (Nationality of ships), 제1항 후단 “There must exist a genuine link between the State and the ship.” 라고 규정한다.

36) 김현정, 국제법상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어업)에 관한 기국의 의무와 책임,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1호(2015), P.82 참고.

37) 라이베리아, 파나마, 나우루 등 이른바 조세피난처(tax heaven)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선적을 그 나라로 옮기는 방법을 말한다.

이점이 있는 경우이다. 다섯째, 선박등록국의 엄격한 운항 또한 안전기준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³⁸⁾

라. 편의치적제도의 단점

편의치적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편의치적 국가가 행정적으로 기국책임을 미이행하거나 불완전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³⁹⁾ 즉, 편의치적을 통하여 선적을 유지한 국가들은 자국 어선에 대하여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의 의지가 없거나 혹은 기국책임을 이행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IUU어업행위를 하는 원양어선에 대한 통제력이 매우 미약한 상태가 되는 경향이 크다. 즉, 편의치적이 IUU어업행위를 유발하는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자유등록제도는 편의치적국에게는 주요한 수입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많은 경우 자유등록부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운영되기에 투명성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다른 종류의 편의치적선과 달리 어선의 경우 편의치적은 어류, 특히 다랑어류 등에 대한 국제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편의치적을 한다. 이들은 아프리카 혹은 중남미 등 국제조약에 미가입한 국가나 어업에 대한 관리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국가로 선적을 옮긴 후 국제적인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편의치적을 한다. 따라서 종종 IUU어업행위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CCAT)’는 편의치적선이 2002년 10월 현재 380척이 있다고 발표하고 정기적으로 당해 어선의 이름을 공개하였다.

38) 강종희, 한철환, 황진희 (2001), 편의치적제도 활용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p.20 참조

39) 이하의 내용은 Duncan Copeland (EJF), IUU fishing and the exploitation of Flags of Convenience, PPT에서 내용 인용 2-3페이지

〈그림 2-2〉 전세계 편의치적국가



자료: 환경정의연합(EJF), Lowering the Flag 보고서, 8-9페이지 인용

마. 편의치적제도 개선 주장

환경정의연합(EJF)은 편의치적을 이용한 IUU행위와 어업범죄행위 분석하여 편의치적선과 IUU어업행위, 어업범죄 간의 연결 관계를 부각시켰다. 특히, 조업선뿐만 아니라 환적선 및 운반선에 있어서의 편의치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국제적 합의문서에 의한 어선식별번호 제도도 또한 연구하였다.⁴⁰⁾

그 결과 어선과 냉동운반선에 대한 편의치적 금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에 의하여 구속될 수 있는 국제등록부(global registry)의 창설, 선박식별시스템의 개발 및 선박 블랙리스트 제도의 지속적 활용을 제안하였다. EJF는 그 이후에도 국제적으로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편의치적제도의 규제 및 개선, 금지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벌이고 있다.⁴¹⁾

환경정의연합(EJF)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아래의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⁴²⁾

40)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EJF), “Lowering the Flag” (2010)

41) 가령 선적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구선적국인 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각 국가가 입법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IUU어선에 의한 편의치적의 남용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FAO차원의 국제적 구속력 있는 합의문을 도입할 필요성 강조 - 여기에는 국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기국에게 부여하는 조치의 기준, 실시가능한 조치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
둘째, IUU어업행위를 국제적인 조직범죄의 일종으로 인식하는 경향 확산 - 그리하여 실질적 소유자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셋째, EU를 포함하여 개별국가는 어선 및 운반선 지원선에 대하여 자유등록부(Open Registry) 폐지
넷째, 자국민의 편의치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의 도입 - 가령, 편의치적 허가제 도입으로 근본적인 편의치적 봉쇄 시도가 그것이다.
다섯째, 세계등록부(Global Record)제도와 새로운 어선식별시스템의 도입

EU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여전히 EU NO. 1005/2008 규정을 이용하여 IUU어업행위를 단속할 것을 주장
둘째, 비협력적 제3국 조항을 활용하여 무역 제재를 고리로 하여 IUU어업행위 문제에 접근할 것을 강조
셋째, EU회원국들이 어선과 냉동운반선 등에게 편의치적 등록을 폐쇄
넷째, EU회원국이 “선적에 관계없이 자국민의 소유한 모든 선박(ALL vessels under national ownership, no matter what flag)”에 대하여 책임지는 법적 요건을 도입⁴³⁾ (타이완 사례를 들고 있음)

(2)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불법어업 관련 권고적 의견 부여

2015년 4월 2일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는 서부아프리카 연안국들의 지역수산기구인 SRFC(Sub- Regional Fisheries Commission)⁴⁴⁾가 제기한 불법어업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 권고적

⁴²⁾ Duncan Copeland (EJF), 전계 보고서 7페이지 참조

⁴³⁾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UN해양법협약(UNCLOS) 제117조(자국민을 대상으로 공해생물자원 보존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 동 협약 제217조 기국에 의한 법령집행 (Enforcement by flag Stags) 등을 들 수 있다.

의견(advisory opinion)을 부여하였다.⁴⁵⁾ 불법어업에 대한 첫 번째 국제소송으로서 큰 반향을 일으킨 동 의견부여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어업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건을 문제 삼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적 구속력 있는 판결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⁴⁶⁾

먼저 동 의견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본안의견으로서 타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의 IUU어업행위에 대한 기국 의무로서 상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지닌다고 보았다. 또한 IUU 어업행위에 대한 기국 법적 책임은 연안국 등 SRFC 회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자국선에 의한 IUU어업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바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기국이 IUU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상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다하지 않은 경우는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⁴⁷⁾ 이에 따라 IUU어업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국이 상당한 주의의무에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연안국과 관련하여 연안국들이 공유하는 어족자원의 보존과 개발을 위하여 서로 협의하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동 결정이 기국의 책임과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 점에 기초하려 볼 때,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이도록 주장하거나, 향후의 해양경계협상, 어업협정 등에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4) 세네갈 다카르에 위치하며, 감비아, 기니, 까보베르데, 세네갈, 시에라리온 기니비사우, 모리타니아, 등 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있다.

45) Advisory Opinion on the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Submitted by the 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SRFC),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Case No. 21, 2 April 2015. 국제해양법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http://www.itlos.org/>

46) 자세한 내용은 한덕훈, 「ITLOS결정, 향후 불법조업 사건의 법률적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 『현대해양』, 2015년 5월호, 62면 참조.

47) 상당한 주의의무 관련하여 김현정, 「국제법상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어업)에 관한 기국의 의무와 책임」,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p82. 2015. 6. 참조

제3장 국내의 관련 법제도 및 정책

1. FAO 항만국조치협정

1) 국내의 관련 제도

IUU어업행위 근절 및 IUU어획물교역 방지의무는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을 고려 중인 TPP 협정문안에도 들어와 있다.⁴⁸⁾ 즉, 최근 공개된 TPP 환경챕터 제20.16.5(b)조에 따르면 ‘IUU어선으로 등재된 선박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국제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더 이상 존속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⁴⁹⁾ 또한 IUU어업 방지를 위한 구체적 의무로서 항만국조치의 실시와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어획증명서 또는 무역증명서 제도 준수 노력을 들고 있다.⁵⁰⁾ 그만큼 불법어업과 관련된 규제는 비단 기존의 어업관련 국제규

48) 지난 2015년 10월 5일자로 TPP협정문 타결선언이 있었고, 11월 5일 협정문 기탁국인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에서는 협정문안을 공개하였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웹사이트 참조
<http://www.mfat.govt.nz/Treaties-and-International-Law/01-Treaties-for-which-NZ-is-Depositary/0-Trans-Pacific-Partnership-Text.php>

49) TPP환경챕터 제20.16.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To that end, no Party shall grant or maintain any of the following subsidi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1 of the SCM Agreement that are specific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 of the SCM Agreement:

(a) subsidies for fishing that negatively affect fish stocks that are in an overfished condition; and
 (b) subsidies provided to any fishing vessel while listed by the flag State or a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or Arrangement for IUU fishing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at organization or arrangement and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전계 웹사이트 참조

50) TPP환경챕터 제16.15조. In support of efforts to combat IUU fishing practices and to help deter trade in products from species harvested from such practices, each Party shall:

a) cooperate with other Parties to identify needs and build capacity that woul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is Article;
 b) support 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 compliance, and enforcement systems, including by adopting, reviewing, or revising, as appropriate, measures to deter vessels flying its flag and its nationals from engaging in IUU activities and measures to address the transshipment of fish or fish products caught through IUU activities;

범만이 아니라 무역협정과 관련된 규정에도 환경관련 규범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IUU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들은 이제 자유무역규범(free trade agreement)으로도 그 문안이 들어와 국제법적 구속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한편, FAO 항만국협정은 이와 같은 불법어업 대비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의 효시적인 성격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현재 FAO 항만국조치협정에 대하여 그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¹⁾ 또한 해양수산부는 지난 EU의 한국에 대한 비협력적 제3국 잠정적 지정 과정에서 국내 항구에서 이미 FAO 항만국조치협정 수준에 상응하는 항만국 검색을 국내항구에서 시행하여 왔다고 보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2014년 1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01척을 검색하여 IUU의심행위를 7건이 발견되었다고 보도되었다.⁵²⁾

즉, 현재 해외에서 어획물 적재한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 입항 48시간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신고하도록 하였다.(원양산업발전법 제14조, 항만국검색).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관련성 확인된 경우 선박 입항, 출항, 항만 이용 금지 및 어획물 양륙 전 재 포장 가공 연료 물자의 공급, 정비 수리 등 항만서비스 일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4조 제4항)

원양산업발전법 제14조⁵³⁾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⁵⁴⁾에 따

c) implement port state measures;

d) strive to act consistently with relevan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of which it is not a member so as not to undermine those measures; and

e) endeavor not to undermine catch or trade documentation schemes operated by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 or arrangements (RFMA) 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has in its scope the management of shared fisheries resources, including straddling and highly migratory species, where such Party is not a Member of those organizations or arrangements.

51)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5.4.23.(목요일) 인용

52) 전제자료

53) 원양산업발전법 제14조(항만국 검색) ① 해외에서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 48시간 전에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하였거나 이를 지원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5.1.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15.1.6.>

1.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수산물을 적재한 경우
2. 국제수산기구 또는 외국 정부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경우
3.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통보하면서 검색을 요청한 경우
4. 외국 정부에 의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국적선박
5. 외국 정부와 체결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어종을 적재한 경우
6. 해양수산부장관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증거가 있거나 특별히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선박의 입항·출항 및 항만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어획물의 양륙·전재·포장·가공 및 연료와 물자의 공급, 정비·수리 등 항만서비스 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⑤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1.6.>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입항·출항 금지, 제3항에 따른 검사·질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동법 제17조의2(사법경찰관) 조업 감사·감독·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치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본조신설 2015.1.6.]

54)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3조(입항 신고 및 항만국 검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외 어획물 적재선박 입항신고서(이하 "입항신고서"라 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1.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경우: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어종에 대한 어획증명 관련 서류
2. 외국과 체결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어종을 적재한 경우: 해당 어종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신고서를 제1항에 따른 입항신고서로 본다. 다만, 해당 선박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종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입항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2015.8.4>

1.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
- 1의2. 「선박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컨테이너를 전용으로 적재하는 선박
2. 「선박안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적화물선(散積貨物船)

라 수산물을 적재하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절차와 검색결과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5-78호, 2015.7.1.일부개정)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고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은 해외 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검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시 제2조 입항신고) 또한 첨부서류 혹은 합법적 어획사실 증명서는 조업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어획증명서로 한다. (고시 제3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검토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항만국조치는 EU의 한국에 대한 비협력적 제3국 예비지정 이후 이를 해제하려고 한국정부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 IUU관련 입법 조치 및 행정적 조치가 강화되었다. 그 중 원양산업발전법상의 항만국검색 조항의 강화를 통하여 사실 FAO항만국조치협정에서 담고 있는 항만국검색 조치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입항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입항을 보류하고 관계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3조의2에 따른 항만국검색관(이하 "항만국검색관"이라 한다)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박을 검색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입항한 선박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출항·양륙(揚陸) 또는 전재를 금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도 천재지변, 그 밖에 승선원·선박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외국과의 어업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일시 입항을 허가할 수 있다.

⑥ 항만국 검색절차 및 검색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1.29.]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항만국검색관)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항만국검색관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7.7>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항만국검색관의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7>

[본조신설 2014.1.29]

들의 많은 부분이 이미 우리의 현행법에 담겨져서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제2장 1. 4) 시사점 부분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일부 충돌이 우려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하여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에 대하여 입법적 일부 수정을 가한다면,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어획증명서

우리나라는 EU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어획증명서 발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예규⁵⁵⁾를 개정하였다. 즉, 조업감시센터(Fisheries Monitoring Center: FMC)의 어선감시시스템(Vessel Monitoring System:VMS) 정보를 어획증명서 발급과 연계하여 VMS정보와 어선에서 작성되는 조업일지를 교차 검증하여 어획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선감시시스템(VMS) 미작동어선 및 불법어업행위 어선에 대하여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중단하고 있다.

2015년 9월 기개발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형 전자적 조업일지(Electronic Logbook System)가 VMS장치와 연동되어 가동된다면 불법조업과 어선의 위치 항적에 대한 교차 검색으로 인하여 검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어획증명서제도가 향후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되어 변경되는 경우에도 우리의 경우 문서의 전자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 EU 어획증명서제도 국내이행

(1) EU의 수산물 수입 검역제도

가. 개 요

유럽연합에 농수산물이 수입되려고 하는 경우 식물, 식품의 위생 상태, 동물

⁵⁵⁾ 유럽공동체(EC)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 절차 예규 (2014.5.21.)

의 수의학적 안전도 검사 및 농약 잔류량에 대한 검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 대한 EU의 대처는 최근 더욱 더 강화되고 있다. EU 회원국의 검역에 관한 최고 중앙기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식품수의청(Food and Veterinary Office)이다. 동 기관은 동·식물 검역, 동물의 복지, 식품위생 등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을 시행한다.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 및 제 3국의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감독하고 있다.⁵⁶⁾ 실제 제품에 대한 검역 자체는 회원국의 검역당국에서 담당한다.

EU지역 내로 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건강소비자보호국(Directorate-General for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에서 인정하는 비(非) EU 국가의 해당 행정기관이 발급한 공식 인증서가 필요하다.⁵⁷⁾ 이 공식인증서는 수출 자격이 있는 국가에 사전 발급되어 EU 국가로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산물 어획 증명서

해양수산부 예규 「유럽공동체(EC)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은 유럽이사회(EC, European Council)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이하 “EC IUU 통제법”)에 따라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지역에 수출하는 수산제품의 어획증명서 및 수산제품 설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어획증명서의 적용 범위는 2010년 1월 1일부터 잡은 어획물로서 「EC IUU 통제법 부속서 I」의 제외품목에 포함된 목록을 제외한 HS 코드 제3장 03류, 제16장 16.04류 및 16.05류로 시작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며, 적용 제외품목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담수산제품
- 치어 또는 유생으로부터 얻은 양식 제품
- 관상용 어류(HS 코드 030110)

⁵⁶⁾ 농수산물무역정보, www.kati.net 참조

⁵⁷⁾ 주요국 식품수입제도-농수산물무역정보, www.kati.co.kr 참조

- 활굴(HS 코드— 030710)
- 가리비 과의 조개(펙틴, 클라미스, 프라코펙텐 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 포함)를 포함한 살아있거나 신선 또는 냉장된 가리비, 냉동된 가리비 (Coquilles St Jacques (Pecten maximus). 기타 신선 또는 냉장된 가리비

품목번호	품 명
0307 21	산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CN 0307 21 00)
0307 29	기타

- 혼합

품목번호	품 명
0307 31	산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307 29	기타
ex 1605 90	기타(CN 1605 90 11과 1605 90 19)

- 달팽이(HS 코드 0307 60 00, 바다 달팽이 제외)
- 어류의 분, 조분,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정) (HS 코드 0305 10 00)
-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가리비, 굴, 달팽이(ex 1605 90 30)
-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수생무척추동물(HS 코드 1605 90 00)

〈표 3-1〉 담수수산물

품목번호	품 명
0301 09	기타 활어 : 송어(살모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키리소가스터
0301 92	기타의 활어 : 잉어
ex 0301 99	기타 : 담수어(CN 0301 99 11과 0301 99 19)
0302 11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단,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송어(살모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키리소가스터)
0302 12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단,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태평양 연어(앙코링쿠스 넬카,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앙코링쿠스 케타, 앙코링쿠스 차비차, 앙코링쿠스 키수즈, 앙코링쿠스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연어(후코후코)

〈표 3-1〉 담수수산제품(계속)

품목번호	품 명
0302 66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단,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어육을 제외한다: 뱀장어(앵굴라 종)
ex 0302 69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단,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기타: 담수어(CN 0302 69 11과 0302 69 19)
0303 11	냉동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태평양 연어(양코링쿠스 넬카, 양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양코링쿠스 케타, 양코링쿠스 차비차, 양코링쿠스 키수츠, 양코링쿠스 마소 및 양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양코링쿠스 길래, 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스소가스티), 다만 간과 어란을 제외한다.
0303 21	냉동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송어(살모트루타, 양코링쿠스 미키스, 양코링쿠스 클라키, 양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양코링쿠스 길래, 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스소가스티)
0303 22	냉동 어류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대서양 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연어 (후코후코)
0303 76	냉동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뱀장어(앵굴라 종)
ex 0303 79	기타 냉동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CN 0303 79 11과 0303 79 19)
ex 0304 19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민물어 (CN 0304 19 13; 0304 19 15; 0304 19 17; 0304 19 19와 0304 19 91
ex 0304 29	냉동한 피레트 : 담수어 (CN 0304 29 13; 0304 29 15; 0304 29 17와 0304 29 19)
ex 0304 99	기타 냉동 어육: 담수어 (CN 0304 99 21)
ex 0305 30	어류의 피레트,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혼제한 것은 제외한다: 태평양 연어(양코링쿠스 넬카, 양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양코링쿠스 케타, 양코링쿠스 차비차, 양코링쿠스 키수츠, 양코링쿠스 마소 및 양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연어(후코후코),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CN 0305 30 30): 송어(살모트루타, 양코링쿠스 미키스, 양코링쿠스 클라키, 양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양코링쿠스 길래, 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스소가스티)와 잉어(CN 0305 30 90)
ex 0305 41	혼제한 어류, 피페트를 포함한다: 태평양 연어 (양코링쿠스 넬카, 양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양코링쿠스 케타, 양코링쿠스 차비차, 양코링쿠스 키수츠, 양코링쿠스 마소 및 양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연어(후코후코)
ex 0305 59	건조한 어류, 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혼제한 것을 제외한다: 송어(살모트루타, 양코링쿠스 미키스, 양코링쿠스 클라키, 양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양코링쿠스 길래, 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스소가스티)와 잉어(CN 0305 59 80)

〈표 3-1〉 담수수산물(계속)

품목번호	품 명
ex 0305 69	염장한 어류(건조 또는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및 염수장한 어류: 태평양 연어(양코링쿠스 넬카, 양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양코링쿠스 케타, 양코링쿠스 차비차, 양코링쿠스 키수츠, 양코링쿠스 마소 및 양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연어(후코후코) (CN 0305 69 50); 송어(살모트루타, 양코링쿠스 미키스, 양코링쿠스 클라키, 양코링쿠스 아구 아보니타, 양코링쿠스 길래, 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와 잉어(ex CN 0305 69 80)
ex 0306 19	분,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하여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하는 기타 갑각류, 냉동: 민물 가재(crayfish) (CN 0306 19 10)
ex 0306 29	분,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하여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하는 기타 갑각류, 냉동이 아닌: 민물 가재(crayfish) (CN 0306 19 10)
1604 11 00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연어
ex 1604 19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연어를 제외한 연어과(CN 1604 19 10)
ex 1604 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어류: 연어(CN 1604 20 10); 연어를 제외한 연어과(CN 1604 20 30)
ex 1605 40 00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 딜과 함께 조리한 민물 가재, 냉동

자료 : 유럽공동체(EC)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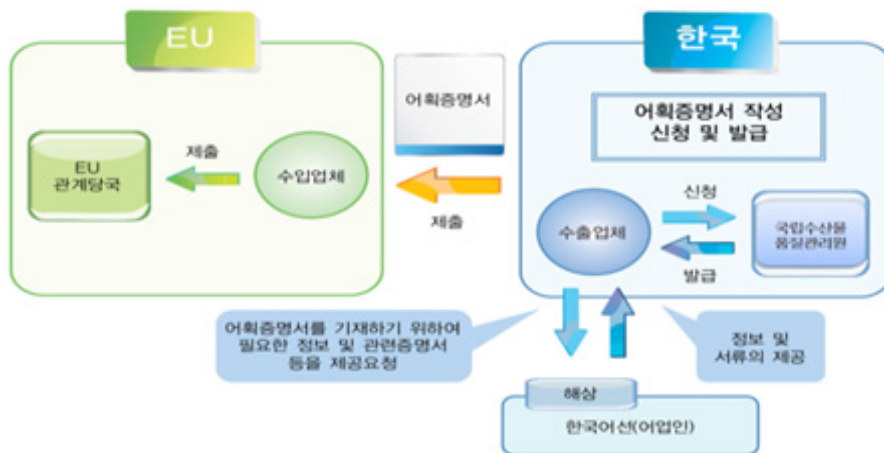
다. 어획증명서의 발급

어획증명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되며, 수입업자는 유럽 영토 내 도착 예정시간으로부터 적어도 근무일 기준 3일 전에 수입하고자 하는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승인 받은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국의 관할당국은 다음의 경우 추가 증명서류 또는 기국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수산제품의 EC 수입을 거부할 수 있다.

- 수입업체가 해당 제품에 대한 어획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수입하려는 제품이 어획증명서에 언급된 것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 어획증명서가 기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어획증명서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누락된 경우
- 수입업체가 수산제품이 제14(1) 또는 제14(2)조의 조건을 충족했는지 증명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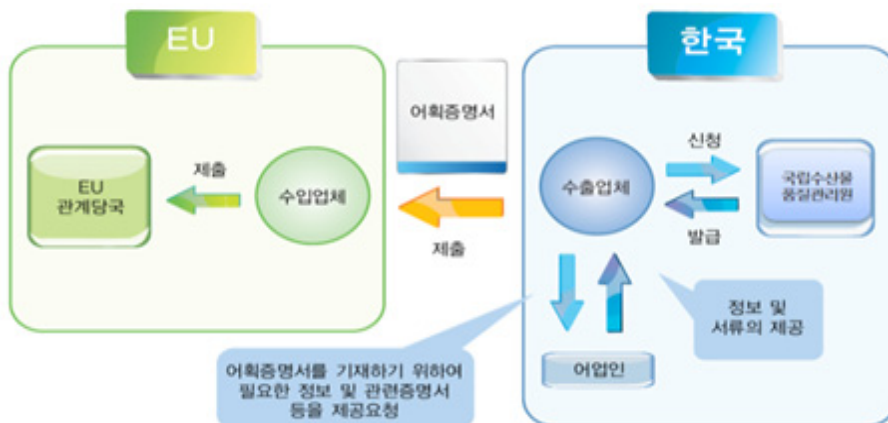
- 어획증명서상에 어획 원산지 선박으로 등재된 어선이 EC IUU 선박 리스트 또는 제30조에서 언급된 IUU 선박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비협력 국가로서 기국(선적국) 당국이 어획증명서를 검증한 경우

〈그림 3-1〉 한국어선(원양어선 포함)에서 EU로 직접 수출하는 수산 제품
(가공하지 않은 수산물)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어획증명서 취급 매뉴얼

〈그림 3-2〉 한국에서 가공한 제품(한국산 원료)을 EU로 직접 수출하는 수산제품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어획증명서 취급 매뉴얼

라. 어획증명서 신청절차

한편 유럽공동체 지역으로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어획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및 수산제품 설명서 발급신청서에 「EC IUU 통제법 부속서 II」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부록 참조>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조업확인서<부록 참조>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출품이 단일 화물인 경우에는 하나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1부를 작성하고, 혼합 화물인 경우에는 각 화물당 별도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1부를 작성해야 한다. 각 다른 어획물에서 유래한 제품으로 화물이 구성된 경우에는 「EC IUU 통제법 이행규칙」 부속서 IV에 따른 간편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작성<부록 참조>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어획물당 별도의 어획증명서 1부를 작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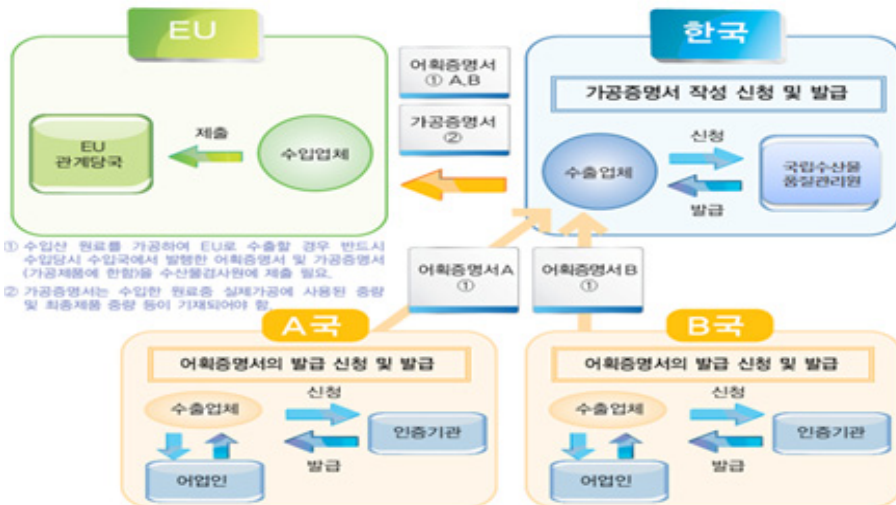
그리고 유럽공동체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수산제품이 소형어선에 의한 어획물로서 소형어선이 다음 각 호의 선박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C IUU 통제법 이행규칙」 부속서 IV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부록 참조>의 간편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양망기(towed gear)가 없는 전체 전장 12미터 미만 선박
- 양망기가 있는 경우 전체 전장 8미터 미만 선박
- 상부구조물이 없는 선박
- 20톤 미만 선박

또한 수입수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EC IUU 통제법 이행규칙」 부속서 IV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제품 설명서에 수출국에서 발급한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가공공장(어선 포함)은 반드시 유럽공동체에 등록된 가공공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수출자가 유럽공동체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EC IUU 통제법 이행규칙」 부속서 V에 따른 별표 2의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에서 채택한 어획증명서를 첨부하여 유럽공동체에 수출하는 경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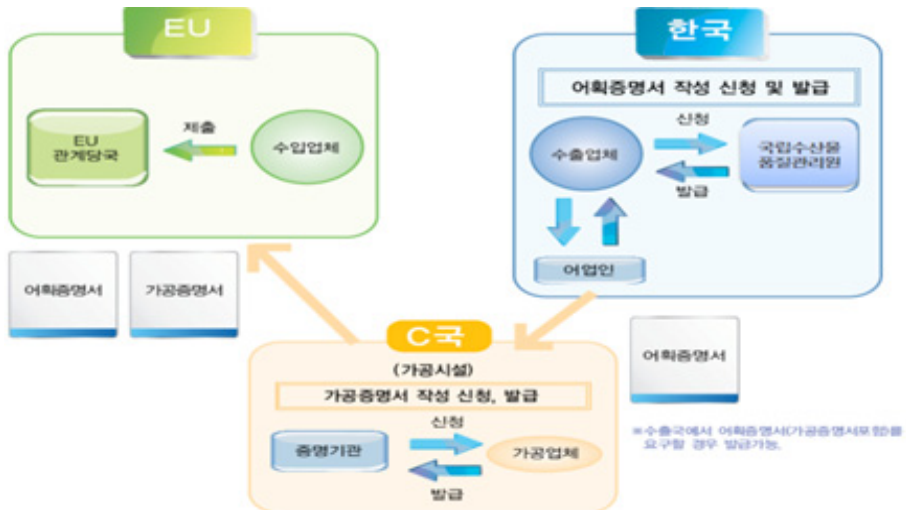
는 어획증명서 등의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림 3-3〉 한국에서 가공한 제품(외국산 원료)을 EU로 직접 수출하는 수산제품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어획증명서 취급 매뉴얼

〈그림 3-4〉 한국산 원료를 제3국에서 가공하여 EU로 직접 수출하는 수산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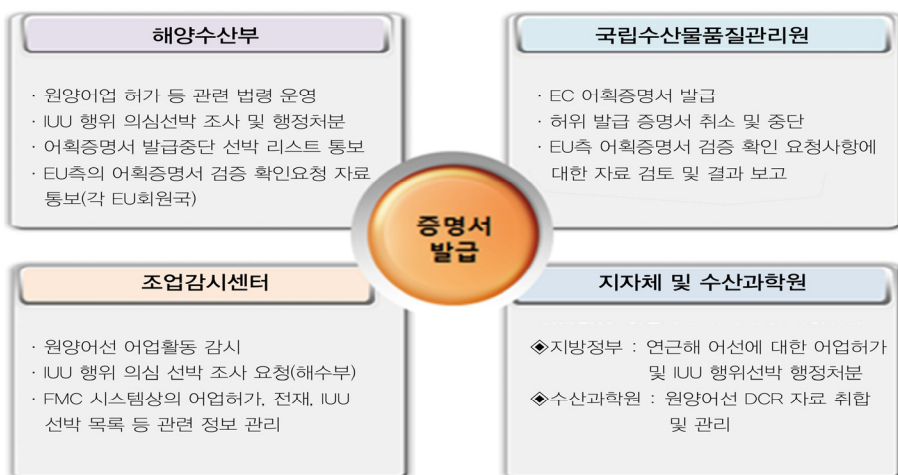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어획증명서 취급 매뉴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및 수산제품 설명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어획증명서를 발급한다. 첫째, 유럽공동체에서 정한 IUU 어업활동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둘째 국제수산기구 또는 지역수산기구의 불법어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셋째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의 경우 최근 2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실적이 있는지 여부, 넷째 우리나라 원양 어선의 경우 최근 2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실적이 있거나 현재 관련 기관으로부터 조사받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그리고 선박위치정보(VMS, Vessel Monitoring System)와 조업일지(로그북)상의 위치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선박위치정보 작동 여부, 연안국 입어 조업시 연안국 어업허가 여부, 어선에 전재 시 해당 수역 관할 연안국의 전재 허가 여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항구 입항시 하역 신고 및 해당 정부기관의 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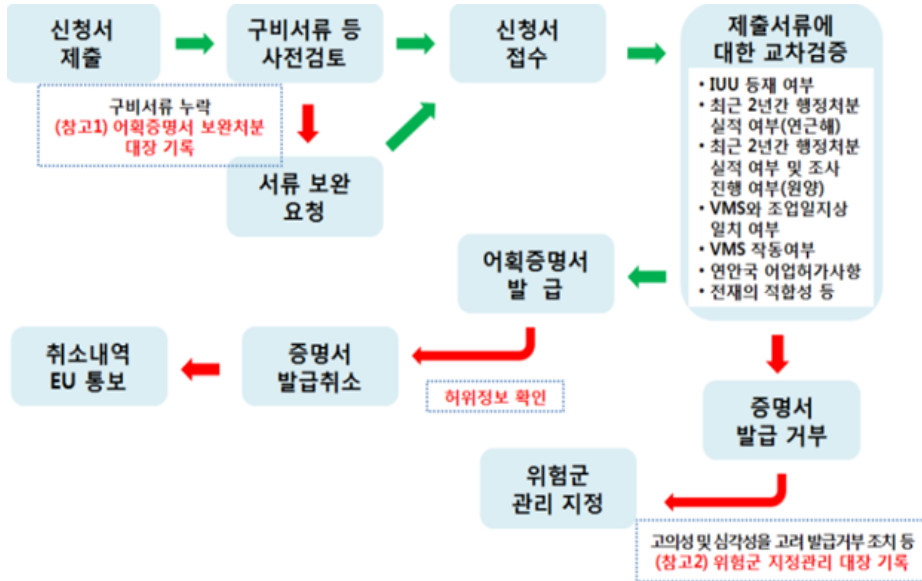
이상의 해당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때에는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서명날인을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의 간편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 수산제품 설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dnjs 신청자에게 발급하게 된다.

〈그림 3-5〉 기관별 업무 구분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어획증명서 취급 매뉴얼

〈그림 3-6〉 발급 절차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어획증명서 취급 매뉴얼

2) 지역수산물관리기구 어획증명제도 국내이행

(1)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이하에서는 “CCSBT”)는 단일 어종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지역수산물관리기구로 남방참다랑어의 총허용어획량(TAC) 결정 및 국별 어획량의 할당을 결정한다. 동 지역수산물관리기구는 1994년 호주, 뉴질랜드 및 일본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최초에는 동 3개국이 어획쿼터의 할당을 받았으나 이후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가입하여 최근에는 6개 회원국 및 3개 협력적비회원국이 어획쿼터 할당 대상국으로 되어 있다.

한편 CCSBT는 2008년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연례회의에서 지역수산물관리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RFMO) 가운데 최초로

포괄적인 어획증명제도를 남방참다랑어에 대해 채택하였다. 이는 어획 시부터 양륙, 전재, 수출에 이르기까지 남방참다랑어의 모든 이전 및 운송과정을 어획 증명서에 기록하게 하여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다랑어의 개체당 식별 표식(TAG)을 부착하도록 하여 결국 불법어획물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⁵⁸⁾

CCSBT의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 이행 결의안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1년 6월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해, 원양산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를 마련하였다. 해당 고시의 적용범위는 양륙이동어획환적하거나 국내 유통,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남방참다랑어이다. CCSBT의 어획증명제도에 요구되는 서류는 양식장 입식 서식, 양식장 이전 서식, 어획모니터링 어식, 어획태그서식, 재수출 또는 국내 제품 양륙 후 수출서식이다.

〈표 3-2〉 CCSBT 어획증명제도 요구 서류 및 정보

요구 서류	주요 정보
양식장 입식 서식(FSF)	· 회원국과 협력적 비회원국 관할권 하 양식장에 남방참다랑어 입식이 있는 경우 작성 · 남방참다랑어의 어획, 견인 및 양식에 대한 정보 포함
양식장 이전 서식(FIF)	· 회원국과 협력적 비회원국 관할권 하에서 남방참다랑어 양식장간 이전에 해당되는 경우 작성
어획모니터링 서식 (CMF)	· 남방참다랑어의 수출 목적으로 양륙되는 경우, 최초 수출일에 작성 · 상업적 판매를 위해 양륙한 견인 중에 발생한 모든 남방참다랑어 사망은 어획모니터링 서식의 해양에서 잡은 어류에 작성 · 양식여부에 관계없이 예기치 않은 어획을 포함한 모든 남방참다랑어의 어획, 양륙, 전재, 수출 및 수입에 대한 정보 작성 · 호주 남방참다랑어 양식장에서 냉동선으로 이전해서 수출하는 경우 작성

⁵⁸⁾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어획증명서제도 채택, (구)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참조 mifaff.go.kr

〈표 3-2〉 CCSBT 어획증명제도 요구 서류 및 정보(계속)

요구 서류	주요 정보
어획 태그 서식(CTF)	· Filtering 또는 loining 등과 같은 가공을 제외한 남방참다랑어 원어에 대하여 부착된 태그를 부착한 개별 어류에 대한 정보 작성 · CPC는 추가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기존의 CTF 맨위에 CMF 번호를 삭제하고 칸을 추가하여 각 개별 남방참다랑어 태그 관련 CMF번호를 기입하는 등 자유재량으로 개정할 수 있음
재수출 또는 국내제품 양륙 후 수출 서식(REEF)	· 국내제품으로 양륙 또는 수입한 최초 시점에 이미 어획모니터링 서식에 기록된 남방참다랑어로 일부 또는 전부 수출/재수출일 경우에 작성

남방참다랑어가 양륙·이동·어획·환적된 경우 어선 선장, 정치망 운영자 또는 양식장 운영자, 선장 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등은 REEF를 제외한 CDS를 신청할 경우에는 CDS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CDS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CDS 발급 신청시 원장은 남방참다랑어에 대한 CDS의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해당 남방참다랑어에 대한 CDS의 총 확인량이 자국 관리연도의 쿼터 또는 어획 제한량(선박이나 정치망에 허용된 개별 쿼터를 포함한다) 이내인지, 해당 남방참다랑어가 관련 보존관리 조치를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2) 대서양참치보전위원회(ICCAT)

대서양참치보전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 이하 “ICCAT”)는 1969년 FAO 주도로 발족된 기구로서 다랑어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기구로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 동 기구는 대서양 다랑어 자원에 대한 IUU 어업행위를 방지하여 합법적인 조업 관행의 정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ICCAT의 주요 특징은 권고(recommendation)에 대하여도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무역 제재와 같은 모든 회원국들에 대해 효력을 가지는 문건은 권고의 형식을 취한다. 단순히 위원회나 회원국의 준수를 촉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ICCAT 의사결정에 있어, 결

정(decision)은 위원회에서 체약국 2/3 이상의 출석, 출석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모든 회원국에게 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권고(recommendation)는 반대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ICCAT협약 제3조, 제8조)⁵⁹⁾

한편 ICCAT는 2006년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및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대서양 참치보존위원회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행정규칙을 마련하였다⁶⁰⁾. 어획증명제도의 적용 범위는 양육이동·어획·환적하거나 국내 유통,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참다랑어에 한한다.

국내유통 또는 수출하려는 경우 어선 선장, 정치망 운영자 또는 축양장 운영자 등은 어획증명서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어획증명서, 어업허가장 사본 또는 정치망, 축양장 등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선장의 어획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참다랑어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 해당 참다랑어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총 확인량이 자국 관리 연도의 쿼터 또는 어획 제한량 이내인지, 해당 참다랑어가 관련 보존관리 조치를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어획 및 양육된 참다랑어의 양이 1톤 미만이거나 세 마리 이하인 경우에는 7일 이내 또는 수출하기 전까지 어획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업일지 또는 판매계약서를 어획증명서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표 3-3〉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주요 내용

구 분		주요정보
1	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번호	

59) 국제수산규범의 국내이행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정보서비스 www.prism.go.kr 참조, 국제수산규범의 국내이행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 www.prism.go.kr 참조

60) 2012년 7월 10일 시행

〈표 3-3〉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주요 내용(계속)

구 분		주요정보
2	어획정보	선박 이름, 기국, ICCAT 문서번호, 어획날짜, 지역 및 사용어구, 어류 숫자, 전체 무게 및 평균 무게, 공동조업 ICCAT 문서번호, 태그번호, 정부인증, 권한당국과 서명권자 이름, 직책, 서명, 인장 및 날짜
3	활어 교역을 위한 교역정보	제품설명, 수출자, 판매자 정보, 이동수단에 대한 설명, 정부인증, 권한당국과 서명권자 이름, 직책, 서명, 인장 및 날짜, 수입자/구매자
4	이전 정보	예인선 설명, ICCAT 이전증명서 번호, 선박명, 기국, ICCAT 문서번호, 이전 중 사망한 어류 숫자, 사망한 어류의 총 무게(kg), 예인 케이지 설명, 케이지 번호
5	전재정보	운반선 설명, 선명, 기국, ICCAT 문서번호, 날짜, 항구 이름, 항구국, 위치, 제품 설명, 총 무게, 정부인증, 권한당국과 서명권자 이름, 직책, 서명, 인장 및 날짜
6	축양장 정보	수확설명, 수확날짜, 어류숫자, 전체 무게와 평균 무게, 태그번호, ICCAT 지역 읍저버 정보, 이름, ICCAT 번호, 서명, 정부인증, 권한당국과 서명권자 이름, 직책, 서명, 인장 및 날짜
7	교역정보	제품설명, 총무게, 수출자/판매자 정보, 수출 또는 판매자 정보, 수출 또는 출발 위치, 수출업체 이름, 주소, 서명, 날짜, 도착국가, 이송에 대한 설명, 정부인증, 권한당국과 서명권자 이름, 직책, 서명, 인장 및 날짜, 수입자/구매자 정보, 수입 또는 도착 위치, 수입업체 이름, 주소, 서명 및 날짜

3) 검토

우리나라는 상기에서 설명한 절차를 거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EC 어획증명서 및 지역수산물 어획증명서의 발급하고 있다. 현재는 조업감시센터의 전자조업일지와 조업감시시스템의 항적기록을 비교하여 어획증명서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발급한다. EU측에서 질의나 확인요구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를 재확인하여 설명하고 발급하고 있다. 종이 형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자화된다면 발급절차와 진위 확인절차에 걸리는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어업범죄

1) 국내제도

최근 국내에서는 주로 IUU어업행위에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등 제도 강화 및 개정법에 기반한 집행력 강화가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 어업범죄 관련하여 해외에서의 논의 동향이 소개되거나, 국내의 일부 원양업체가 해외에서 어선원 인권 유린 의심행위로 문제 제기된 사안들이 소개되기는 하였다. 조세포탈 등과 관련하여 해외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거나 편의치적과 관련되어 조세포탈이 이루어진다는 보도⁶¹⁾가 있었다.

현재에는 조세포탈 중심의 문제가 국내에 주로 제기되고 있으나, 해외 연안국 현지 공무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조업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경우, 즉 부패 문제에 연루된 경우 만약 국내회사가 영국 혹은 미국의 현지에 설립된 법인과 관련된 경우라면,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 Act: FCPA) 혹은 영국의 “뇌물방지법”(U.K. Bribery Act 2010) 등의 역외적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⁶²⁾

원양산업발전법은 대한민국국민 혹은 내국법인에게 적용된다. 대한민국국민이 합작으로 설립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납입자본금 또는 보유 의결권이 50퍼센트를 초과해야 원양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원양어업자가 될 수 있다. (동법 제2조 제호 원양어업의 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외국인과의 합작기준)

한편, 편의치적을 통하여 해외로 선적을 변경한 경우 기국이 우리나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국주의 원칙상 우리나라가 당해 선박에 대하여 관할권 및 통

61) 아주경제 2013년 4월1일자 “1500억원대 제3국에 치적한 선박업체 ‘적발’”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30401000420> (2015년 11월 4일 검색)

62) 미국 FCPA법은 미국의 법인이나 미국인이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취득하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외국의 공무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공식적인 행동을 취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행위를 하지 않게 한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은 적용범위가 미국회사에서 미국회사가 아닌 경우 (non-U.S. firm)로 확대되었다. 즉,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미국 내에서 부정한 대가 지급이 발생하도록 한 경우 공모 혹은 교사방조범으로 처벌 가능하도록 하였다. <http://www.justice.gov/criminal/fraud/fcpa/docs/fcpa-english.pdf> (2015년 11월 3일 최종방문)

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상 제12조의2 자국민 통제관리 조항⁶³⁾은 해외수역에서의 IUU어업행위를 금지의무를 부과하였고, 동법 제13조 제2항의 원양어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모든 대한민국국민에게 부과하였다. 만약 동 조항에 따른 금지행위가 어업범죄행위에까지 확대된다면 편의치적선을 이용한 어업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 조항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IUU어업행위도 우리 원양산업발전법상 이미 형사범죄화되어 처벌되지만⁶⁴⁾, 어선원 인권유린, 마약밀수, 조세포탈 등은 국내 실정법상⁶⁵⁾으로도 이미 형사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우리 국적 어선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원양산업발전법은 제13조 제3항에서 외국인 선원의 근로여건 개선하고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며 이를 원양어업자에게 준수시킬 의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 기국선은 아니더라도 자국민에 의하여 운영되는 해외 국적 어선에서도 이런 행위가 발생

63) 원양산업발전법 제12조의2(자국민 통제 및 관리) ①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수역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책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과 협력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자를 차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6.]

64) 원양산업발전법 제33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의 5배 이하와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8배 이하와 16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1.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해당 국가에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획실적·양륙량·전재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65)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특정금융거래 정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다.

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⁶⁶⁾

2) 검토

어업범죄를 논의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경우는 주로 테러자금의 국제 조직범죄에서 발생하여 이전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고, EU는 이런 점보다는 수산물 생산국 및 주요 수입국으로서 국제수산물 관련시장에서의 주도권 경쟁에서 자신들의 체계 및 틀로 세계질서를 이끌고 나가려는 면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범죄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있어서 미국은 더 적극적인 반면, EU는 어업범죄 논의를 지지하면서도, IUU문제와는 다소 대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인터폴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스케일 및 관련 국제컨퍼런스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66) 원양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참조

제4장 국내의 대응 방향

1.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

1) FAO항만국조치협정

이미 원양산업발전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타국어선이라도 국내 항구로 입항하려는 경우 국내 항만국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FAO항만국조치협정 자체가 그 적용대상이 타국의 어선이다. 따라서 자국적 어선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타국적 어선이지만 자국민에 의하여 운영되는 어선의 경우에 국내 항구로 입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FAO항만국조치협정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이미 우리의 원양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FAO항만국조치협정에 우리나라가 가입하여도 국내 선사 등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어획증명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는 어획증명서관련 자발적지침이 성립되고 있는 단계이다. 구체적인 문구로서 성립하기 위하여는 회원국에 회람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구체적인 문안을 조정하는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쳐서 성립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당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 회원국이 본 지침을 고려하여 따르도록 하는 자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국이 동 지침에 대하여 존중은 하겠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획증명서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할 지는 아직은 장담하기 이를 것이다.

다만, 어획증명서 자발적지침이 적시하듯이 수입국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어획증명서제도들이 상호간 통일화되고 전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페이퍼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어획증명서 발급절차가 전산화되고 보다 통일적인 양식의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일견 이러한 점은 수산물 수출국 혹은 관련 국내업계의 입장에서는 무역장벽적인 측면을 덜어주는 면이 있다고 보여 진다.

차기 FAO수산위원회에서 자발적지침을 채택하여 성립된 이후 각국 및 지역 수산관리기구에서의 세부적 개정 논의에 따라 어획증명서 개정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정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산물 수출국은 추가적 혹은 실질적 부담이 지워지지 않도록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즉, 주요 수산물 수출국인 한국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와도 공조하여 수산물 수출에 있어서 부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UN, FAO, OECD 등 국제회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논지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번 자발적 지침에 들어간 사용자 친화적인(user-friendly) 어획증명서 제도의 추구는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어업범죄

현재는 미국, EU, 노르웨이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 제기된 어업범죄의 문제점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당해 어업범죄라는 개념이 알려지고 있으며 국제적 비난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IUU어업행위 이상으로 국제적 형사공조와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공산이 크다.

이는 결국 기국주의 원칙에 따라 기국의 책임이 더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는 기국이 아니더라도 원양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자국민 통제 관리조항을 확대하여 어업범죄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원양기업으로서는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편의치적에 대한 문제점 제기, 외국인어선원 보호 강화 등 방향

으로의 제도 개선의 요구가 커질 경우 원양기업의 영업 환경도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제도 및 정책적 개선 방향

1) FAO 항만국조치협정

FAO 항만국조치협정은 기본적으로 국내의 법제도와 현재로서 충돌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최근 2차례에 걸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항만국 검색 관련 규정을 보완하거나 일부 조항을 신설하였다. (동법 제14조 참조)

그러나 동 협정 제1조 제b호 어류 개념 등과 관련하여서는 원양산업발전법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 제2장 1. 4) 시사점 부분에서 전술하였듯이 FAO항만국조치협정은 수산동물 및 수산식물에 대하여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의 정의 규정과 비교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 원양산업발전법에 수산동물 및 식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따로 신설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FAO항만국조치협정은 한국이 국제적인 불법 어업방지의 흐름에 동참하여 책임있는 조업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의미를 가진다. 지난 2년간 미국 및 EU로부터 불법어업 의심국가로 지정되어 수차례의 관련 법규 개선 및 조업감시센터(FMC) 개소 등 지속적 개혁 작업의 결과 지정해제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FAO항만국조치협정도 역시 그러한 정부의 노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동 협정의 대상은 타국어선이 국내 항만에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중국의 불법어업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방지책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중국어선은 우리 주변 해역에서 어획 후 직접 우리 항만에 양륙하지는 않고 중국으로 돌아가 우리를 포함한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와의 IUU협정 결과 우리 항만에 들어오는 불법어획물에 대한

관리 강화로 인하여 불법어획물이 양륙하는 경우는 줄고, 일정부분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결국 동 협정과 관련하여서는 책임있는 조업국가로서의 IUU어획물 차단이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한다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 어획증명서

(1) 사용하기 편리한 어획증명서 개발

어획증명서와 관련하여 아직 FAO어획증명서에 관한 자발적지침을 성립시키고 노력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향후 추이를 보면서 국내제도의 개선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와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s)의 사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 단계인 자발적지침 수준이라도 그 안에서 표방한 핵심 원리의 경우를 참작하여 한국 및 아시안 등 수산물수출국에서도 사용하기 편리하고 쉬운(user-friendly) 어획증명서를 도출하도록 EU 등과 공동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획 출처를 확인하여 불법어업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도는 매우 좋은 반면 오직 수입국의 의도만 반영된다면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될 우려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어획증명서가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고 전산화하여 수출업체의 입장에서 절차가 간소화하게 된다면 향후 편리한 점은 있을 것이다. 즉, 사용하기에 편리한 점, 복잡하지 않을 것, 발급절차도 더 세부적이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더 주안점을 두도록 향후 자발적지침의 성립과정이나 시장국 및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관련 회의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내년도 FAO 무역소위에서 거론되고 입장이 표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선진국형 자원관리 시스템 기반

향후 어획증명서가 국내의 조업감시시스템, 전자조업일지와 연동되어 실시

간 작동되고 전자화된다면 이는 다른 의미로 실시간 어획 감시 모니터링 체계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의 축적을 기반으로 실시간 수산자원 관리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선진국형 자원관리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를 통하여 향후 우리가 가입여부를 고려 중인 TPP에 대한 협상 시한 단계 더 발전한 자원관리 시스템을 근거로 하여 협상력 확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TPP 가입 이후에도 선진국형 자원관리시스템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어획증명서로의 체계 개편 노력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3) 중국 불법어업 문제 대처

국내 EEZ내에서 어획한 중국 불법어획물이 한국으로 수입되어 들어올 때 어획증명서 제도를 활용한다면 어획장소를 면밀히 파악하게 함으로서 사전적 차단(filtering) 기능이 작동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불법어획물의 수입 감소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전산화 및 교차확인 시스템 구축

어획증명서가 전자화된다면 어획정보 관련 데이터에 대한 조업일지 등과의 교차확인이 보다 원활하게 되어 어획보고의 신뢰성(credibility)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전자화되어 어획지가 노출되고 계속 데이터화하여 보관하는 경우 어획 장소는 한 기업에게는 일종의 영업비밀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므로 일정한 기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보접근의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제한적인 사람에게만 공개 혹은 제한적인 기간만 보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어획장소의 노출로 인하여 WTO 및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는 효과도 존재할 것이다.

(5) 표준화 경쟁 참여

어선감시제도(VMS)와 전자조업일지를 한국의 정보통신기술로 개발해낸 경험을 근거로 하여 향후 국제적으로 어획증명서가 전자화되는 경우 표준화 경쟁에 참여하는 것도 수산물 수출국 및 IT 선진국으로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일 것이다.

3) 어업범죄

원양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자국민 통제 및 관리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기국선이 아니라도 우리 국민에 의하여 운영되는 원양어선에서 IUU어업을 하여서는 안 될 의무 및 동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였다.⁶⁷⁾ 동법 제13조 제2항이 들고 있는 사항에 어업범죄의 내용이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업범죄는 이미 국내적으로 형사범죄인 사항인 점을 고려하고, 동법 동보 제3항에 국제수산물기구 또는 연안국과 협력하여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자를 차단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의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여한 점을 고려할 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집행이 효과적으로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공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업범죄에 대하여는 타국과의 공조를 통한 법집행 추진을 위한 형사사법공조의 확대가 요청된다고 판단된다. 즉,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포탈 혹은 편의치적선을 이용한 조세포탈의 경우는 해외당국과 정보교류 및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매우 크며 그렇게 해야만 실효성 있는 대응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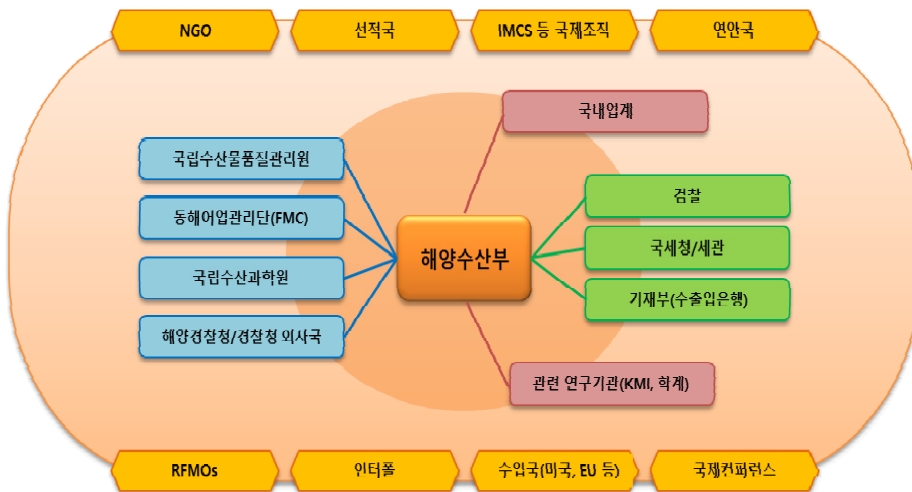
또한 한편으로는 자국민 조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어업범죄의 경우도 구성요건으로 추가하거나,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이외의 현행 법률로 이미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면 관련국들과 국제사법공조 혹은 범죄인인도협정 확대 강

67) 2015년 1월 6일 신설

화 등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편의치적 국가들과 양자협정을 통하여 형사관할권을 양해 받는 협정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⁶⁸⁾

중장기적으로 향후 어업범죄 관련 거버넌스는 아래 그림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향후 국내 조세당국, 검찰 등 법집행 당국과의 협조가 필요하고, 선적국, 연안국, IMCS 등과의 국제 정보 동향에 대한 교류를 추진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 연구 및 대응 거버넌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 한국의 어업범죄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방향



자료 : National Plan of A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NPOA-IUU), 2014.08 자료 참조 및 저자 재작성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IUU어업행위 관련 권고적 의견 부여 이후에도 기국이 가지는 구체적인 법적 의무의 내용에 대하여는 아직 조금 더 논의가 필

⁶⁸⁾ 유사한 취지로 고명석, 『편의치적선에 대한 형사관할 및 국제공조 개선방안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19권 제2호, 2013. 4. 185면 참조

요할 듯 보인다. 하지만 동 의견에서 불법어업과 관련되는 법적 책임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가진다.

향후 우리나라도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어업행위에 대하여 관리의 소홀 등을 이유로 하여 중국 당국에 기국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리적 기반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그 구체적 활용 방안 및 내용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추진된다면 향후 중국과의 어업협상 및 해양경제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논리로 가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불법어업 증거와 자료의 꾸준한 확보도 중요할 것이다.

3. 추진 로드맵

1) FAO 항만국조치협정

FAO항만국조치협정은 당해 내용에 있어서 헌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입법 사항이 포함된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동의를 포함한 국내적 입법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동 협정에 대한 서명, 승인 및 비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 등 관련 부처의 검토를 포함한 정부의 법률검토 작업 및 서명 이후의 국회에서의 승인 및 비준을 위한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만약 추가적인 입법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정부의 서명 및 일정기간의 경과만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른 시기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정부의 서명 및 공포만으로 발효되는 경우에는 동 협정 자체는 법률의 효력은 아닌 법률보다는 하위인 법령의 효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미 항만국 검색 등 원양산업발전법에 그 내용의 상당부분이 입법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시행되는 것에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진 과정은 해양수산부의 내용 검토를 시작으로 하여 법제처의 법률 검토 및 자문 이후 외교부의 동 협정 서명, 국회 심사와 동의를 거치면 일정기간 후

발효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수산부에서 당해 협정 비준의 추진 주체이며 협정 비준에 따른 항만지정, 항만국 검색관 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어획증명서

어획증명서는 향후 2016년 상반기 FAO 수산물무역소위원회에서 회원국이 참여하여 자발적지침(안)을 검토한 후 2016년 6월경(잠정)에 있을 FAO 수산위원회에서 확정되어 성립될 것이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향후 국내적 제도적 개편의 방향과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는 단계는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오히려 자발적 지침 성립 이후 해외에서 논의가 구체화될 때 추가적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수산물 수출국의 논리를 어필하는 것이 선행과제라고 사료된다. 2016년도에 자발적지침이 확정된 이후 관련국가에서 논의가 전개될 것을 감안한다면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 1년~2년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자발적지침의 성립 이후 각국단계에서 개정되는 어획증명서가 업데이트되는 경우 우리나라로서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조업감시센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어획량, 어획장소를 어획증명서 발급전 교차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어획증명서 발급이 현재 이루어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향후 교차확인체계를 전산화하여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양수산부의 원양산업과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어획증명서의 개정 움직임을 연구하고 향후 구체적인 개선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중국 수산물 수입시 어획증명서를 요구하도록 함은 불법어업의 방지에 일견 기여할 것으로 파악되나, 우리나라만 요구하여 관철시키기는 어렵고, 양국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일본 혹은 아세안 국가로 확대하여 어획증명서제도가 가지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향후 전자어획증명서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이러한 시도들이 더욱 촉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해역의 수산자원 보호 등 국익 측면을 고려한다면 대중국 어획증명서제도 도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중

국 수산물 수출을 고려 시 우리의 어획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어업범죄

어업범죄 논의는 공해상에서 발생하는 어업범죄에 대하여는 편의치적국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형사관할권을 양해 받는 양자협정을 체결하여 승선검색 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행 조세포탈, 마약밀매, 자금세탁 등 현행 실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국내 법제도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해외 법집행 당국, 인터폴과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인인도협정 등 관련국과의 양자합의 및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업범죄와 관련하여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회성 연구에 그치지 말고 유관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진체계로는 조세포탈 등 실정법 집행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국세청이 중심이 되고 해양수산부는 관련 기초자료 제공 등으로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연안국 혹은 편의치적국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교류를 하고 기국으로서의 조치 결과를 현지에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4-1〉 주요 이슈 향후 추진 일정

[illegible]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FAO항만국조치협정, 어획증명서 개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결과물인 자발적지침, 그리고 어업범죄 논의는 모두 책임 있는 수산업국가로서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논의들이다. 이들은 모두 IUU어업행위 규제 논의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즉, FAO항만국조치협정과 어획증명서는 IUU어획물이 시장에 제한 없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IUU어획물에 대한 시장소비를 줄이게 함으로서 결국은 원인행위인 IUU어업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개발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FAO항만국조치협정은 시장유통의 첫 단계인 항만에 양륙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규제하는 것이고, 어획증명서제도는 어획보고의무에 기반을 두고 어획지의 공개 및 확인으로 IUU어획물이 아니라고 하는 확인을 받도록 요구함으로써 시장국에 진입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반면, 어업범죄 논의는 IUU어업행위 과정에서 IUU어업행위 규제에서 나아가 이에서 파생된 범죄행위를 규제하고 국제적으로 공조하여 근절하려는 움직임이다.

상기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FAO항만국조치협정이 국내에서 승인 비준함에 있어서 현재의 국내법제도와 큰 충돌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EU로부터 비협력적 제3국 지정 및 미국으로부터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된 이후 2015년 1월 6일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항만국검색 조항 등을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획증명서에 관한 자발적지침의 경우는 아직 성립 과정에 있으나 향후 드러낼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서 현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는 어획증명서제도의 내용과 발급절차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업계에도 어획증명서의 통일화, 전산화의 방향이 수출 구비서류의 복잡함과 행

정절차의 간소화라는 방향으로 자리 잡을 지 혹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지 판단하기에는 자발적지침이 성립되려는 단계인 현 시점은 판단하기에 이른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향후 논의 동향을 더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수산물 수출국으로서 어획증명서제도를 향후에도 계속 사용해야만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보다 사용하기 편리한 어획증명서로 개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업계의 정보들이 누적되는 만큼 정보관리에 보다 철저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어획증명서 논의에 따라서 전산화, 통일화의 방향으로 어획증명서가 개정된다면 어획장소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따른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기초 데이터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근거하여 선진국형 자원관리시스템 도입이 앞당겨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TPP협정에서의 과도어획보조금 개선 요구에 대하여도 자원관리시스템의 개선으로 과도어획에 방지하는 경우 의미를 크게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즉, TPP협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업범죄라는 개념은 향후 IUU어업행위에 대한 각국의 협력 강화와 더불어 국제적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어업범죄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테러단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주지하듯이 인터폴은 정기적으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IUU어업행위 및 어업범죄에 대한 문제의식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연안국에서 자국의 관할권과 인근 수역에서 타국어선이 그 조업 중인 어선원에 대한 인권유린도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어업범죄에 대한 논의는 문헌 연구 또는 수산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및 전문가그룹을 통하여 국내에 관련 내용이 주로 알려져 왔다. 어업범죄는 국내 실정법으로도 이미 대부분 형사범죄라는 점이 중요하다. 즉, 어업범죄로 논의되는 세부항목에 대해 형사범죄화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국내적으로 범죄화된 내용을 형사사법을 강화하는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국제적 공조체계 구축 및 정보의 공유가 향후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편의치적은 국제적 관습으로 인정되고 국내 원양업계 및 해운업계에 서도 널리 이용하는 제도이지만 동 제도가 IUU어업행위 및 어업범죄에 빈번히 이용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편의치적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정부 당국에서도 추가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부여도 불법어업에 관한 최초의 국제소송 결과물이기에 향후 유사사건에 대하여 시금석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 권고적 의견은 향후 대중국 해양관련 협상에서 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정책 제언

현재 우리나라는 원양산업발전법 제14조에 근거하여 해외에서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신고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국내 항구에 입항하려는 외국국적 선박에 대하여도 적용되어 이들에게도 항만국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명확한 조문제시를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제14조의 선박은 국내선박 혹은 외국국적선박을 말한다’ 등으로 정의가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는 동법 제14조에서 선박 앞부분에 ‘국내 혹은 외국국적’ 선박이라는 규정을 넣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수산동물 및 수산식물에 대하여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의 정의 규정과의 비교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 원양산업발전법에 수산동물 및 식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따로 신설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어선감시제도(VMS)와 전자조업일지를 한국의 정보통신기술로 개발해 낸 경험을 근거로 하여 향후 국제적으로 어획증명서가 전자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표준화 경쟁에 참여하는 것도 수산물 수출국 및 IT 선진국으로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일 것이다.

중국 불법어업 문제에 대한 법리적 대응점을 찾기 위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의 권고적 의견을 좀 더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의 해양법 관련 판례, 해양관련 국제협약 조문, 해외 유사사례 등 국제법적 논리를 검토하고 개발하여 향후 있을 양국 간 해양경계획정이나 어업협정 관련 협상에서 근거 자료 확보 측면만이 아니라 공박의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지금까지 중국 불법어업을 대처하는 국내의 노력은 주로 해양경비대 집행 강화 혹은 국내 법률 처벌수위의 강화를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 연구의 본문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획증명서 제도가 개정되고 전자화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중국 어선의 어획지와 항적을 판별하여 수입통제를 가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중국 불법어업 통제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국제법적 논리를 연구하고 개발한다면 중국 불법어업에 대한 방지와 향후 경계획정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외교부, 관련 국제법 및 수산 분야 전문가의 협업체계 구축과 심도 있는 연구가 매우 시급히 필요할 것이다.

수산분야의 국제법적 연구는 해양환경, 해양자원, 통상 심지어 해운 분야의 국제법 및 국내 법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인 만큼 연구하는 연구자도 비교적 소수이고 축적된 연구도 그다지 많지 않은 형편이다. 그 중 UN, FAO, OECD의 수산관련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관련과 및 외교부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특정한 이슈가 수산과 동시에 다른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는 대응 정도가 관련 국익을 보호하기에 사실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

TPP협정문 타결과 함께 알려진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수산보조금 중 과도 어획보조금과 IUU어업보조금에 대하여는 향후 각국이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제는 각국 간 혹은 지역적 자유무역협정에서도 환경보호라는 대의를 위하여 수산보조금을 금지하자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듯 각국 간의 학자들의 논의에서 시작하고 WTO DDA 논의에서 각국 정부들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오던 내용들이 방향을 달리하여 지역무역협정이라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에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수산분야는 필연적으로 ‘국제적’일 수밖에 없다. 회유성어족, 경계왕래성어족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산자원의 각국 간의 보호, 환경의 보호는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우리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수산분야의 여러 이슈들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선진국 혹은 개발도상국과 합종연횡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는 국제적 최신 논의의 핵심을 파악하고 대응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향후에는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의 보존관리조치를 포함한 수산 분야 국제법, 국제규범에 대한 연구들이 일회성 연구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랜 조업국가인 우리나라의 국내 어업관련 종사자와 해외수역 조업선사의 이익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조업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더불어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1) 국내 논문 및 보고서

- 강종희·한철환·황진희, 『편의치적제도 활용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12.
- 고명석, 『편의치적선에 대한 형사관할 및 국제공조 개선방안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19권 제2호, 2013. 4.
- 권한용, 「腐敗의 世界化 傾向과 韓國의 反腐敗法에 대한 OECD의 평가」, 『경영법률』 제17집 제3호, 2007. 4.
- 권혁준, 『편의치적과 관련한 국제사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2015. 6.
- 김선태·강상근·정재용·김득봉, 『우리나라 항만국통제 점검 실태와 문제점 개선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20권 제6호, 2014. 12.
- 김선표 외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근절을 위한 FAO의 국제행동계획과 국내 이행방안」, 『해양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2001.
- 김선표·홍성길·신영태·이형기, 『유엔해양협약 이후 새로운 공해어업질서의 법적 성격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0. 12.
- 김현정, 「국제공역 보호를 위한 항만국 관할권」, 『서울국제법연구』 제19권 제1호, 2012. 6.
- 김현정, 「국제법상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어업)에 관한 기국의 의무와 책임」,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2015. 6.
- 김현정,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어업)의 개념 정의-법과 정치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59권 제3호 2014.
- 박민규 외 『WTO 체제하에서 항구국 조치 협정 대응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09.
- 박민규, 「국제지역수산물관리기구와 주요국가의 IUU통제제도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41권 제3호 2010. 12.

- 박민규 외 『FAO/IUU 체결에 따른 국내 대응방안』, 농림수산물식품부, 2011.
- 박민규, 「불법어업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한국의 처벌 제도 개선 연구」, 『해양정책연구』, 제29권 제2호 2014. 12.
- 손재학, 「공해생물자원 보존관리와 IUU어업대응책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8.
- 이길원, 「WTO협정과 FTA에 따른 분쟁해결의 관할권 경합」, 『국제법학회논총』, 제59권 제3호, 2014. 9.
- 이광남·서병귀, 「IUU어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수산해양교육연구』, 제15권 제1호, 2003.
- 이명규, 「공해어선에 대한 항만국 통제」, 『한국해법학회지』, 제27권 제2호, 2005.
- 이재민, 「IUU 규제조치와 국내법의 역외적용 -미국 및 EU의 관련 입법과 집행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제12권 제3호, 2014. 11.
- 임정호,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동향과 그 시사점 -반부패행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2012.
- 최세련, 「편의치적 선박의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한국해법학회지』, 2012. 04.
- 한덕훈, 「제67차 유엔총회 수산결의안 검토 회의주요이슈와 분석」, 『KMI글로벌수산포커스』, 제54호, 2012. 11.
- 한덕훈, 「ITLOS결정, 향후 불법조업 사건의 법률적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 『현대해양』, 2015년 5월호, 62페이지.
- 한덕훈, 「IUU어업행위에 대한 국제형사범죄화논의 주요동향과 전망」, 『계간 해양수산』, 2013. 5.
- 한덕훈, 「IUU어업행위에 대한 최근 국제사회의 입법 및 판례 동향과 국내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지』, 2014.
- 한덕훈, 「TPP협정 환경챕터의 국내 수산보조금 분야 법률적 영향 분석」, 『산업연구원』, 2015.12.

2) 국내 관련 홈페이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국외 문헌〉

1) 국외 논문 및 보고서

Anthony D.Scott, "Introducing Property in Fishery Management," Use of Property Rights in Fisheries Management, FAO Fisheries Technical Paper 404/1, November 1999.

Chad McGuire, "Some Back-Ended Legal and Political Issues in United States Fisheries Management," Journal of Politics and Law, 3(2), pp. 52-61, 2010.

David Balton, "Strengthening the law of the sea: The new agreement on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ume 27, Issue 1-2, 1996

Dell'Apa et al., "The Magnuson-Stevens Act(1976) and its Reauthorizations: Failure or Success for the Implementation of Fishery Sustainability and Management in the US?" Marine Policy, 36, pp. 673-680.

EU, "EU Council Regulation NO.1005/2008"

FAO Technical Guidelines for Responsible Fisheries,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Guifan Xue, "IUU Fishing and International Enforcement Cooperation in the North Pacific Ocean (NPO)", Institute for the Law of the Sea Ocean University of China (Qingdao)

INTERPOL, "ENVIRONMENTAL CRIME PROGRAMME"

INTERPOL, "Terms of Reference of the INTERPOL FISHERIES CRIME WORKING GROUP"

Katherine Ghilain, "Lacey Act Overview Congressional Briefing", December 2013.

Kristina Alexander, "The Lacey Act: Protecting the Environment by Restricting Trad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anuary 2014.

- Lyon, “1st INTERPOL International Fisheries Enforcement Conference”, INTERPOL, 26-28 February 2013.
- Mary Ann Palma et al., “Promoting Sustainable Fisherie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0.
- Marcus Asner · Katherine Ghilain, “Lacey Act Overview Congressional Briefing”, December 2013.
- Michael E. Porter,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1990.
- NOAA, “Improving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Report to Congress Pursuant to Section 403(a) of the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Reauthorization Act of 2006”, January 2013.
- UNODC,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the Fishing Industry”, 2011.

2) 국외 홈페이지

- 미국 NOAA 수산청 홈페이지 <http://www.nmfs.noaa.gov>
- EU http://ec.europa.eu/fisheries/cfp/illegal_fishing/index_en.htm
- FAO <http://www.fao.org/fishery/topic/3195/en>
- FAOSTAT <http://faostat.fao.org>
- FAO, <http://www.fao.org>
- FAO, Fishstat J
- UN Law of the Sea 홈페이지 <http://www.un.org/Depts/los/index.htm>

부록 1. 유럽공동체(EU)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 절차

[시행 2014.5.26]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European Community Catch Certificate

EUROPEAN COMMUNITY CATCH CERTIFICATE									
Document number				Validating authority					
1. Name		Address				Tel. Fax			
2. Fishing vessel name		Flag-Home port and registration number				Call sign		IMO/Lloyd's number(if issued)	
Fishing licence No-Valid to			Inmarsat No, Fax No, Telephone No, E-mail address(if issued)						
3. Description of product		Type of processing authorised on board				4. References of applicabl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Species	Product code	Catch area(s) and dates	Estimated live weight(kg)	Estimated weight to be landed(kg)	Verified weight landed(kg) where appropriate				
6. Name of master of fishing vessel-Signature-Seal :									
6. Declaration of transhipment at sea Name of master of fishing vessel			Signature and date		Transhipment date/area/position		Estimated weight(kg)		
Master of receiving vessel		Signature		Vessel name		Call sign		IMO/Lloyds number (if issued)	
7. Transhipment authorisation within a port area									
Name	Authority	Signature	Address	Tel.	Port of landing	Date of landing	Seal (stamp)		
8. Name and address of exporter		Signature		Date		Seal			
9. Flag State authority validation :									
Name/title		Signature		Date		Seal(stamp)			
10. Transport details(see Appendix)									
11. Importer declaration									

Name and address of importer	Signature	Date		Seal	Product CN code
Documents under Articles 14(1),(2)of Regulation(EC)No .../2008	References				
12. Import control- authority	Place	Importation authorised(*)	Importation suspended(*)	Verification requested-date	
Customs declaration (if issued)	Number		Date	Place	
(*) Tick as appropriate					

[별지 제2호 서식]

European Community Catch Certificate

Simplified form for fishery products fulfilling the requirements in Article 6 of this
Regulation

(1) EUROPEAN COMMUNITY CATCH CERTIFICATE—Simplified form for fishery products fulfilling the requirements in Article 6 of this Regulation					
Document number			Validating authority(name, address, tel, fax)		
1. Description of product		2. References of applicabl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Species	Product code		Verified weight landed (kg)		
3. List of vessels that have provided catches and the quantities by each vessel(name, registration number, etc. annexed):					
4. Name, address, tel. and fax of exporter		Signature		Date	Seal (stamp)
5. Flag State authority validation:					
Name/title		Signature		Date	Seal(stamp)
6. Transport details (see Appendix)					
7. Importer declaration:					
Name and address of importer		Signature	Date	Seal (stamp)	Product CN code
8. Import control: Authority		Place	Importation authorised(*)	Importation suspended(*)	Verification requested-date
Customs declaration (if issued)		Number		Date	Place

(*) Tick as appropriate

[별지 제3호 서식]

Statement under Article 14(2) of Council Regulation (EC) No .../2008 of 29 September 2008
establishing a Community system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 confirm that the processed fishery products: ... (product description and Combined Nomenclature
code) have been obtained from catches imported under the following catch certificate(s):

Catch certificate number	Vessel name(s) and flag(s)	Validation date(s)	Catch description	Total landed weight(kg)	Catch processed (kg)	Processed fishery product (kg)

Name and address of the processing plant:

.....
.....
.....

Name and address of the exporter (if different from the processing plant):

.....
.....
.....

Approval number of the processing plant:

.....

Health certificate number and date:

.....

Responsible person of the processing plant:	Signature:	Date:	Place:

Endorsement by the competent authority:

.....

Official:	Signature and seal:	Date:	Place:

[별지 제4호 서식]

() CERTIFICATE

Document number		Validating authority (name, address, tel., fax)	
1. Description of product			
Species	Product code	Net weight (kg)	
2. List of vessels that have provided catches and the quantities by each vessel (name, registration number etc.)			
Name of vessel	Registration No.(If applicable)	Catch area(s) and dates	
3. Name of exporter (address, tel. and fax)	Signature	Date	Seal
I, the undersigned, declare that the fishery products mentioned above have been caught before January 1, 2010 with observing the relevant Korean law(the Fisheries Act) and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Stamp Official inspector Name (in capitals) / qualification and title Signature			

[별지 제5호 서식]

유럽공동체 (간편)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한	
구분	☐ 어획증명서 ☐ 간편어획증명서 ☐ 가공증명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EC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절차」에 따라 상기 품종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첨부서류	■ 어획증명서(간편어획증명서 포함) ○ 연인어획물 1. 별지제1호 또는 별지제2호에 따른 (간편)어획증명서 1부 2. 조업허가증 또는 어업면허증 사본 1부 3. 조업사실 확인 관련 서류 1부 4. 거뢰명세서 1부 (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 원양어획물 1. 별지제1호 또는 별지제2호에 따른 (간편)어획증명서 1부 2. 조업일지 사본 및 조업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거뢰명세서 1부 (조업선사와 신청자가 다를 시) 4. 원양어획물 양륙량(별첨) 보고서 사본 1부 (국내항 양륙 시) ■ 가공증명서 1. 별지제3호에 따른 가공증명서 1부 2. 제3국 어획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별지 제6호 서식]

조업 확인서

1.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2. 조업선 정보

조업선명		선장명	
EU등록번호		선적항 (home-port)	
호출번호 (call sign)		IMO번호	

3. 조업 내역

어종	조업구역	조업기간	어획량(kg)

상기 내용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록 2.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2012.07.10. 개정] -별지 서식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별지 제1호서식]

1. ICCAT BLUEFIN TUNA CATCH DOCUMENT (BCD)				No :		1/2	
2. CATCH INFORMATION							
VESSEL / TRAP INFORMATION							
NAME OF THE CATCHING VESSEL/TRAP		FLAG / OPC	ICCAT RECORD NO	INDIVIDUAL QUOTA	CATCH		
NAME OF THE OTHER FISHING VESSELS		FLAG	ICCAT RECORD NO	INDIVIDUAL QUOTA	CATCH		
CATCH DESCRIPTION							
DATE (dd/mm/yy)		AREA	GEAR				
No. of FISH		TOTAL WEIGHT(kg)	AVG. WEIGHT(kg)				
ICCAT RECORD No. of Joint Fishing Operation							
TAG Numbers(if applicable)							
GOVERNMENT VALIDATION							
NAME OF AUTHORITY						SEAL	
TITLE							
SIGNATURE							
DATE (dd/mm/yy)							
3. TRADE INFORMATION							
PRODUCT DESCRIPTION							
LIVE WEIGHT (kg)		No. of FISH	ZONE				
EXPORTER/ SELLER							
POINT OF EXPORTATION/DEPARTURE		COMPANY		ADDRESS			
FARM OF DESTINATION		OPC		ICCAT FFB No.			
SIGNATURE							
DATE (dd/mm/yy)							
TRANSPORTATION DESCRIPTION (Relevant documentation to be attached)							
GOVERNMENT VALIDATION							
NAME OF AUTHORITY						SEAL	
TITLE							
SIGNATURE							
DATE(dd/mm/yy)							
IMPORTER/ BUYER							
COMPANY				PT. of IMPORT/DESTINATION			
ADDRESS				(City, Country, State)			
DATE OF SIGNATURE(dd/mm/yy)				SIGNATURE			
ANNEX(ES) : YES/NO (circle one)							
4. TRANSFER INFORMATION							
TOWING VESSEL DESCRIPTION							
ICCAT TRANSFER DECLARATION No.				ICCAT REC. No.			
NAME		FLAG					
No. of FISH DEAD DURING TRANSFER				TOTAL WEIGHT OF DEAD FISH(kg)			
TOWING CAGE DESCRIPTION CAGE No.							
ANNEX(ES) : YES/NO (circle one)							
5. TRANSHIPMENT INFORMATION							
CARRIER VESSEL DESCRIPTION							
NAME		FLAG		ICCAT REC. No.			
DATE(dd/mm/yy)		PORT NAME				PORT STATE	
POSITION(Lat./Long.)							
PRODUCT DESCRIPTION(indicate net weight in kg. for each type of product)							
FR RD(kg):	GG(kg):	DR(kg):	FL(kg):	OT(kg):	TOTAL WEIGHT "F"(kg)		
FR RD(kg):	GG(kg):	DR(kg):	FL(kg):	OT(kg):	TOTAL WEIGHT "FR"(kg)		
GOVERNMENT VALIDATION							
NAME OF AUTHORITY							
TITLE							
SIGNATURE							
DATE(dd/mm/yy)							
ANNEX(ES): YES/NO (circle one)							

■ 대서양참치포획원칙(IIOCAT) 침다령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별지 제1호서식]

IIOCAT BLUEFIN TUNA CATCH DOCUMENT (BCD)				No :		2/2	
6. FARMING INFORMATION							
FARMING FACILITY DESCRIPTION	NAME	CPC			IIOCAT FFB NO		
	NATIONAL SAMPLING PROGRAM?		LOCATION				
	YES or NO(circle one)						
CAGE DESCRIPTION	DATE (dd/mm/yy)		CAGE No.				
FISH DESCRIPTION	NO. of FISH:		TOTAL WT(kg):		AVG WT(kg):		
IIOCAT REGIONAL OBSERVER INFORMATION	NAME	TITLE		SIGNATURE			
	SIZE COMPOSITION		< 8kg	8-50kg	> 50kg		
GOVERNMENT VALIDATION							
NAME OF AUTHORITY				SEAL			
TITLE							
SIGNATURE							
DATE (dd/mm/yy)							
ANNEX(ES) : YES/NO (circle one)							
7. HARVESTING INFORMATION							
HARVESTING DESCRIPTION							
DATE (dd/mm/yy)		NO. of FISH		TOTAL ROUND WT(kg)			
AVG. WEIGHT(kg)		TAG NOs.(if applicable)					
IIOCAT REGIONAL OBSERVER INFORMATION	NAME	TITLE		SIGNATURE			
GOVERNMENT VALIDATION							
NAME OF AUTHORITY				SEAL			
TITLE							
SIGNATURE							
DATE(dd/mm/yy)							
8. TRADE INFORMATION							
PRODUCT DESCRIPTION(indicate net weight in kg. for each type of product)							
FRD(kg):	GG(kg):	DR(kg):	FL(kg):	OT(kg):	TOTAL WEIGHT		
					"F"(kg)		
FRD(kg):	GG(kg):	DR(kg):	FL(kg):	OT(kg):	TOTAL WEIGHT		
					"FR"(kg)		
EXPORTER/SELLER							
PT of EXPORT/DEPARTURE		COMPANY			ADDRESS		
STATE of DESTINATION							
SIGNATURE							
DATE(dd/mm/yy)							
TRANSPORTATION DESCRIPTION (Relevant documentation to be attached)							
GOVERNMENT VALIDATION							
NAME OF AUTHORITY				SEAL			
TITLE							
SIGNATURE							
DATE(dd/mm/yy)							
IMPORTER/BUYER							
COMPANY				PT of IMPORT/DESTINATION (City, Country, State)			
ADDRESS							
DATE(dd/mm/yy)				SIGNATURE			
ANNEX(ES): YES/NO (circle one)							

부록 3. FAO항만국조치협정 원문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PREAMBLE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Deeply concerned about the continuation of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nd its detrimental effect upon fish stocks, marine ecosystems and the livelihoods of legitimate fishers, and the increasing need for food security on a global basis,

Conscious of the role of the port State in the adoption of effective measures to promote the sustainable use and the long-term conservation of living marine resources,

Recognizing that measures to comba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should build on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flag States and use all available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port State measures, coastal State measures, market related measures and measures to ensure that nationals do not support or engage in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Recognizing that port State measures provide a powerful and cost-effective means of preventing, deterring and eliminating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ware of the need for increasing coordination at the regional and interregional levels to comba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through port State measures,

Acknowledging the rapidly developing communications technology, databases, networks and global records that support port State measures,

Recognizing the need for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to adopt and implement port State measures,

Taking note of the call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the United Nations System,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the Committee on Fisheries of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FAO', for a binding international

instrument on minimum standards for port State measures, based on the 2001 FAO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nd the 2005 FAO Model Scheme on Port State Measures to Comba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Bearing in mind that, in the exercise of their sovereignty over ports located in their territory, States may adopt more stringent measur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Recall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Recalling the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of 4 December 1995, the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s of 24 November 1993 and the 1995 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Recognizing the need to conclude an international agreement within the framework of FAO, under Article XIV of the FAO Constitution,

Have agreed as follows:

PART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Use of term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 (a)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means measures to conserve and manage living marine resources that are adopted and applied consistently with the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ose reflected in the Convention;
- (b) “fish” means all species of living marine resources, whether processed or not;

- (c) “fishing” means searching for, attracting, locating, catching, taking or harvesting fish or any activity which can reasonably be expected to result in the attracting, locating, catching, taking or harvesting of fish;
- (d) “fishing related activities” means any operation in support of, or in preparation for, fishing, including the landing, packaging, processing, transshipping or transporting of fish that have not been previously landed at a port, as well as the provisioning of personnel, fuel, gear and other supplies at sea;
- (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refers to the activities set out in paragraph 3 of the 2001 FAO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IUU fishing’;
- (f) “Party” means a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that has consented to be bound by this Agreement and for which this Agreement is in force;
- (g) “port” includes offshore terminals and other installations for landing, transshipping, packaging, processing, refuelling or resupplying;
- (h)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means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to which its member States have transferred competence over matters covered by this Agreement, including the authority to make decisions binding on its member States in respect of those matters;
- (i)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means an intergovernmental fisheries organization or arrangement, as appropriate, that has the competence to establish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nd
- (j) “vessel” means any vessel, ship of another type or boat used for, equipped to be used for, or intended to be used for,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Article 2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Agreement i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effective port State measures, and thereby to ensure the long-term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living marine resources and marine ecosystems.

Article 3

Application

1. Each Party shall, in its capacity as a port State, apply this Agreement in respect of vessels not entitled to fly its flag that are seeking entry to its ports or are in one of its ports, except for:

- (a) vessels of a neighbouring State that are engaged in artisanal fishing for subsistence, provided that the port State and the flag State cooperate to ensure that such vessels do not engage in IUU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 and
- (b) container vessels that are not carrying fish or, if carrying fish, only fish that have been previously landed, provided that there are no clear grounds for suspecting that such vessels have engaged in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IUU fishing.

2. A Party may, in its capacity as a port State, decide not to apply this Agreement to vessels chartered by its nationals exclusively for fishing in areas under its national jurisdiction and operating under its authority therein. Such vessels shall be subject to measures by the Party which are as effective as measures applied in relation to vessels entitled to fly its flag.

3.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fishing conducted in marine areas that is illegal, unreported or unregulated, as defined in Article 1(e) of this Agreement, and to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4. This Agreement shall be applied in a fair, transparent and non-discriminatory manner,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5. As this Agreement is global in scope and applies to all ports, the Parties shall encourage all other entities to apply measures consistent with its provisions. Those that may not otherwise become Parties to this

Agreement may express their commitment to act consistently with its provisions.

Article 4
Relationship with international law and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prejudice the rights, jurisdiction and duties of Parties under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affect:

- (a) the sovereignty of Parties over their internal, archipelagic and territorial waters or their sovereign rights over their continental shelf and in their exclusive economic zones;
- (b) the exercise by Parties of their sovereignty over ports in their territory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ir right to deny entry thereto as well as to adopt more stringent port State measures than those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including such measures adopted pursuant to a decision of a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2. In applying this Agreement, a Party does not thereby become bound by measures or decisions of, or recognize, any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of which it is not a member.

3. In no case is a Party obliged under this Agreement to give effect to measures or decisions of a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if those measures or decisions have not been adopted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4. This Agreement shall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taking into account applicable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s, including those established through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s well as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5. Parties shall fulfil in good faith the obligations assum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shall exercise the rights recognized herein in a manner that would not constitute an abuse of right.

Article 5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at the national level

Each Party shall,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 (a) integrate or coordinate fisheries related port State measures with the broader system of port State controls;
- (b) integrate port State measures with other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and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taking into account as appropriate the 2001 FAO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nd
- (c) take measures to exchange information among relevant national agencies and to coordinate the activities of such agenci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6

Cooperat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1. In order to promot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with due regard to appropriate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Parties shall cooperate and exchange information with relevant States, FAO,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including on the measures adopted by such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in relation to the objective of this Agreement.
2. Each Party shall,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take measures in support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other States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3. Parties shall cooperate, at the subreg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i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including, where appropriate, through FAO or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arrangements.

PART 2

ENTRY INTO PORT

Article 7

Designation of ports

1. Each Party shall designate and publicize the ports to which vessels may request entry pursuant to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provide a list of its designated ports to FAO, which shall give it due publicity.
2. Each Party shall,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ensure that every port designated and publiciz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has sufficient capacity to conduct inspections pursuant to this Agreement.

Article 8

Advance request for port entry

1. Each Party shall require, as a minimum standard, the information requested in Annex A to be provided before granting entry to a vessel to its port.
2. Each Party shall require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o be provided sufficiently in advance to allow adequate time for the port State to examine such information.

Article 9

Port entry, authorization or denial

1. After receiving the relevant information required pursuant to Article 8, as well as such other information as it may require to determine whether the vessel requesting entry into its port has engaged in IUU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each Party shall decide whether to authorize or deny the entry of the vessel into its port and shall communicate this decision to the vessel or to its representative.
2. In the case of authorization of entry, the master of the vessel or the vessel's representative shall be required to present the authorization for entry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y upon the vessel's arrival at port.
3. In the case of denial of entry, each Party shall communicate its decision taken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o the flag State of the

vessel and, as appropriate and to the extent possible, relevant coastal States,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4.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hen a Party has sufficient proof that a vessel seeking entry into its port has engaged in IUU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in particular the inclusion of a vessel on a list of vessels having engaged in such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adopted by a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procedures of such organization and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the Party shall deny that vessel entry into its ports, taking into due account paragraphs 2 and 3 of Article 4.

5. Notwithstanding paragraphs 3 and 4 of this Article, a Party may allow entry into its ports of a vessel referred to in those paragraphs exclusively for the purpose of inspecting it and taking other appropriate actions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which are at least as effective as denial of port entry in preventing, deterring and eliminating IUU fishing and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6. Where a vessel referred to in paragraph 4 or 5 of this Article is in port for any reason, a Party shall deny such vessel the use of its ports for landing, transshipping, packaging, and processing of fish and for other port services including, *inter alia*, refuelling and resupplying, maintenance and drydocking. Paragraphs 2 and 3 of Article 11 apply *mutatis mutandis* in such cases. Denial of such use of ports shall be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Article 10 Force majeure or distress

Nothing in this Agreement affects the entry of vessels to por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for reasons of force majeure or distress, or prevents a port State from permitting entry into port to a vessel exclusiv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assistance to persons, ships or aircraft in danger or distress.

PART 3 USE OF PORTS

Article 11 Use of ports

1. Where a vessel has entered one of its ports, a Party shall deny, pursuant to its laws and regulations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is Agreement, that vessel the use of the port for landing, transshipping, packaging and processing of fish that have not been previously landed and for other port services, including, *inter alia*, refuelling and resupplying, maintenance and drydocking, if:

- (a) the Party finds that the vessel does not have a valid and applicable authorization to engage in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required by its flag State;
- (b) the Party finds that the vessel does not have a valid and applicable authorization to engage in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required by a coastal State in respect of areas under the national jurisdiction of that State;
- (c) the Party receives clear evidence that the fish on board was taken in contravention of applicable requirements of a coastal State in respect of areas under the national jurisdiction of that State;
- (d) the flag State does not confirm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on the request of the port State, that the fish on board was taken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requirements of a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taking into due account paragraphs 2 and 3 of Article 4; or
- (e) the Party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vessel was otherwise engaged in IUU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including in support of a vessel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Article 9, unless the vessel can establish:
 - (i) that it was acting in a manner consistent with relevan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or

- (ii) in the case of provision of personnel, fuel, gear and other supplies at sea, that the vessel that was provisioned was not, at the time of provisioning, a vessel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Article 9.
-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Party shall not deny a vessel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the use of port services:
 - (a) essential to the safety or health of the crew or the safety of the vessel, provided these needs are duly proven, or
 - (b) where appropriate, for the scrapping of the vessel.
- 3. Where a Party has denied the use of its port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it shall promptly notify the flag State and, as appropriate, relevant coastal States,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its decision.
- 4. A Party shall withdraw its denial of the use of its port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 respect of a vessel only if there is sufficient proof that the grounds on which use was denied were inadequate or erroneous or that such grounds no longer apply.
- 5. Where a Party has withdrawn its denial pursuant to paragraph 4 of this Article, it shall promptly notify those to whom a notification was issued pursuant to paragraph 3 of this Article.

PART 4 INSPECTIONS AND FOLLOW-UP ACTIONS

Article 12 Levels and priorities for inspection

- 1. Each Party shall inspect the number of vessels in its ports required to reach an annual level of inspections sufficient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Agreement.
- 2. Parties shall seek to agree on the minimum levels for inspection of vessels through, as appropriate,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FAO or otherwise.
- 3. In determining which vessels to inspect, a Party shall give priority to:

- (a) vessels that have been denied entry or use of a port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 (b) requests from other relevant Parties, States or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that particular vessels be inspected, particularly where such requests are supported by evidence of IUU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by the vessel in question; and
- (c) other vessels for which there are clear grounds for suspecting that they have engaged in IUU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Article 13 Conduct of inspections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inspectors carry out the functions set forth in Annex B as a minimum standard.
2. Each Party shall, in carrying out inspections in its ports:
 - (a) ensure that inspections are carried out by properly qualified inspectors authorized for that purpose, having regard in particular to Article 17;
 - (b) ensure that, prior to an inspection, inspectors are required to present to the master of the vessel an appropriate document identifying the inspectors as such;
 - (c) ensure that inspectors examine all relevant areas of the vessel, the fish on board, the nets and any other gear, equipment, and any document or record on board that is relevant to verifying compliance with relevan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 (d) require the master of the vessel to give inspectors all necessary assistance and information, and to present relevant material and documents as may be required, or certified copies thereof;
 - (e) in case of appropriate arrangements with the flag State of the vessel, invite that State to participate in the inspection;

- (f) make all possible efforts to avoid unduly delaying the vessel to minimize interference and inconvenience, including any unnecessary presence of inspectors on board, and to avoid action that would adversely affect the quality of the fish on board;
- (g) make all possible efforts to facilitate communication with the master or senior crew members of the vessel, including where possible and where needed that the inspector is accompanied by an interpreter;
- (h) ensure that inspections are conducted in a fair, transparent and non-discriminatory manner and would not constitute harassment of any vessel; and
- (i) not interfere with the master's ability,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to communicate with the authorities of the flag State.

Article 14

Results of inspections

Each Party shall, as a minimum standard, include the information set out in Annex C in the written report of the results of each inspection.

Article 15

Transmittal of inspection results

Each Party shall transmit the results of each inspection to the flag State of the inspected vessel and, as appropriate, to:

- (a) relevant Parties and States, including:
 - (i) those States for which there is evidence through inspection that the vessel has engaged in IUU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within waters under their national jurisdiction; and
 - (ii) the State of which the vessel's master is a national;
- (b)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 (c) FAO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ticle 16

Electronic exchange of information

1. To facilitat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where possible, establish a communication mechanism that allows for direct electronic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due regard to appropriate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2. To the extent possible and with due regard to appropriate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Parties should cooperate to establish an information-sharing mechanism, preferably coordinated by FAO, in conjunction with other relevant multilateral and intergovernmental initiatives, and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existing databases relevant to this Agreement.
3. Each Party shall designate an authority that shall act as a contact point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under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notify the pertinent designation to FAO.
4. Each Party shall handle information to be transmitted through any mechanism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consistent with Annex D.
5. FAO shall request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to provide information concerning the measures or decisions they have adopted and implemented which relate to this Agreement for their integration, to the extent possible and taking due account of the appropriate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into the information-sharing mechanism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rticle 17

Training of inspectors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inspectors are properly trained taking into account the guidelines for the training of inspectors in Annex E. Parties shall seek to cooperate in this regard.

Article 18

Port State actions following inspection

1. Where, following an inspection, there are clear grounds for believing that a vessel has engaged in IUU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the inspecting Party shall:

- (a) promptly notify the flag State and, as appropriate, relevant coastal States,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State of which the vessel's master is a national of its findings; and
- (b) deny the vessel the use of its port for landing, transshipping, packaging and processing of fish that have not been previously landed and for other port services, including, *inter alia*, refuelling and resupplying, maintenance and drydocking, if these actions have not already been taken in respect of the vessel,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including Article 4.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Party shall not deny a vessel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the use of port services essential for the safety or health of the crew or the safety of the vessel.

3. Nothing in this Agreement prevents a Party from taking measures that are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in addition to those specified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luding such measures as the flag State of the vessel has expressly requested or to which it has consented.

Article 19

Information on recourse in the port State

1. A Party shall maintain the relevant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public and provide such information, upon written request, to the owner, operator, master or representative of a vessel with regard to any recours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port State measures taken by that Party pursuant to Articles 9, 11, 13 or 18, including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public services or judicial institutions available for this purpose, as well as information on whether there is any right to seek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n the event of any loss or damage suffered as a consequence of any alleged unlawful action by the Party.

2. The Party shall inform the flag State, the owner, operator, master or representative, as appropriate, of the outcome of any such recourse. Where other Parties,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been informed of the prior decision pursuant to Articles 9, 11, 13 or 18, the Party shall inform them of any change in its decision.

PART 5
ROLE OF FLAG STATES

Article 20
Role of flag States

1. Each Party shall require the vessels entitled to fly its flag to cooperate with the port State in inspections carried out pursuant to this Agreement.
2. When a Party has clear grounds to believe that a vessel entitled to fly its flag has engaged in IUU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and is seeking entry to or is in the port of another State, it shall, as appropriate, request that State to inspect the vessel or to take other measure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3. Each Party shall encourage vessels entitled to fly its flag to land, transship, package and process fish, and use other port services, in ports of States that are acting in accordance with, or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Parties are encouraged to develop, including through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FAO, fair, transparent and non-discriminatory procedures for identifying any State that may not be acting in accordance with, or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4. Where, following port State inspection, a flag State Party receives an inspection report indicating that there are clear grounds to believe that a vessel entitled to fly its flag has engaged in IUU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it shall immediately and fully investigate the matter and shall, upon sufficient evidence, take enforcement action without delay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5. Each Party shall, in its capacity as a flag State, report to other Parties, relevant port States and, as appropriate, other relevant States,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FAO on actions it has taken in respect of vessels entitled to fly its flag that, as a result of port State measures taken pursuant to this Agreement, have been determined to have engaged in IUU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6.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measures applied to vessels entitled to fly its flag are at least as effective in preventing, deterring, and eliminating IUU fishing and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as measures applied to vessel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3.

PART 6
REQUIREMENTS OF DEVELOPING STATES

Article 21
Requirements of developing States

1. Parties shall give full recognition to the special requirements of developing States Parties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port State measure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To this end, Parties shall, either directly or through FAO, other specialized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or other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bodies, including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provide assistance to developing States Parties in order to, *inter alia*:

- (a) enhance their ability, in particular the least-developed among them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to develop a legal basis and capac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effective port State measures;
- (b) facilitate their participation in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promote the effectiv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ort State measures; and
- (c) facilitate technical assistance to strengthe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ort State measures by them, in coordination with relevant international mechanisms.

2. Parties shall give due regard to the special requirements of developing port States Parties, in particular the least-developed among them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to ensure that a disproportionate burden result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is not transferred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m. In cases where the transfer of a disproportionate burden has been demonstrated, Parties shall cooperate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by the relevant developing States Parties of specific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3. Parties shall, either directly or through FAO, assess the special requirements of developing States Partie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4. Parties shall cooperate to establish appropriate funding mechanisms to assist developing Stat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hese mechanisms shall, *inter alia*, be directed specifically towards:

- (a) develop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rt State measures;
- (b) developing and enhancing capacity, including for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and for training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of port managers, inspectors, and enforcement and legal personnel;
- (c) 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 and compliance activities relevant to port State measures, including access to technology and equipment; and
- (d) assisting developing States Parties with the costs involved in any proceeding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at result from actions they have taken pursuant to this Agreement.

5. Cooperation with and among developing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s set out in this Article may include the provision of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through bilateral, multilateral and regional channels, including South-South cooperation.

6. Parties shall establish an ad hoc working group to periodically report and make recommendations to the Parties on the establishment of funding mechanisms including a scheme for contributions, identification and mobilization of funds, the development of criteria and procedures to guide implementation, and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funding mechanisms. In addition to the considerations provided in this Article, the ad hoc working group shall take into account, *inter alia*:

- (a) the assessment of the needs of developing States Parties, in particular the least-developed among them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 (b) the availability and timely disbursement of funds;
- (c) transparency of decision-making and management processes concerning fundraising and allocations; and
- (d) accountability of the recipient developing States Parties in the agreed use of funds.

Partie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reports and any recommendations of the ad hoc working group and take appropriate action.

PART 7 DISPUTE SETTLEMENT

Article 22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1. Any Party may seek consultations with any other Party or Parties on any dispute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with a view to reaching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as soon as possible.
2. In the event that the dispute is not resolved through these consultations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he Parties in question shall consult among themselves as soon as possible with a view to having the dispute settled by negotiation, inquiry, mediation, conciliation, arbitration, judicial settlement or other peaceful means of their own choice.
3. Any dispute of this character not so resolved shall, with the consent of all Parties to the dispute, be referred for settlement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or to arbitration. In the case of failure to reach agreement on referral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or to arbitration, the Parties shall continue to consult and cooperate with a view to reaching settlement of the dispute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living marine resources.

PART 8 NON-PARTIES

Article 23 Non-Parties to this Agreement

1. Parties shall encourage non-Parties to this Agreement to become Parties thereto and/or to adopt laws and regulations and implement measures consistent with its provisions.
2. Parties shall take fair, non-discriminatory and transparent measure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and other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to deter the activities of non-Parties which undermin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PART 9
MONITORING, REVIEW AND ASSESSMENT

Article 24
Monitoring, review and assessment

1. Parties shall, within the framework of FAO and its relevant bodies, ensure the regular and systematic monitoring and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s well as the assessment of progress made towards achieving its objective.
2. Four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AO shall convene a meeting of the Parties to review and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is Agreement in achieving its objective. The Parties shall decide on further such meetings as necessary.

PART 10
FINAL PROVISIONS

Article 25
Signature

This Agreement shall be open for signature at FAO from the Twenty-second day of November 2009 until the Twenty-first day of November 2010 by all States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Article 26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1.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by the signatories.
2.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epositary.

Article 27
Accession

1. After the period in which this Agreement is open for signature, it shall be open for accession by any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2.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epositary.

Article 28

Participation by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1. In cases where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that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ferred to in Annex IX, Article 1, of the Convention does not have competence over all the matters governed by this Agreement, Annex IX to the Conven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articipation by such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in this Agreement, except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at Annex shall not apply:

- (a) Article 2, first sentence; and
- (b) Article 3, paragraph 1.

2. In cases where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that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ferred to in Annex IX, Article 1, of the Convention has competence over all the matters governed by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to participation by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in this Agreement:

- (a) at the time of signature or accession, such organization shall make a declaration stating:
 - (i) that it has competence over all the matters governed by this Agreement;
 - (ii) that, for this reason, its member States shall not become States Parties, except in respect of their territories for which the organization has no responsibility; and
 - (iii) that it accept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under this Agreement;
- (b) participation of such an organization shall in no case confer any rights under this Agreement on member States of the organization;
- (c)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the obligations of such organization under this Agreement and its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organization or any acts relating to it, the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shall prevail.

Article 29
Entry into force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days after the date of deposit with the Depositary of the twenty-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or 27.
2. For each signatory which ratifies, accepts or approves this Agreement after its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day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3. For each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which accedes to this Agreement after its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day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accession.
4.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ny instrument deposited by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not be counted as additional to those deposited by its Member States.

Article 30
Reservations and exceptions

No reservations or exceptions may be made to this Agreement.

Article 31
Declarations and statements

Article 30 does not preclude a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when signing, ratifying, accepting, approving or acceding to this Agreement, from making a declaration or statement, however phrased or named, with a view to, *inter alia*, the harmonization of its laws and regulations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such declaration or statement does not purport to exclude or to modify the legal effect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their application to that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Article 32
Provisional application

1. This Agreement shall be applied provisionally by States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which consent to its provisional

application by so notifying the Depositary in writing. Such provisional application shall become effective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2. Provisional application by a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terminate 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or that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or upon notification by that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to the Depositary in writing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provisional application.

Article 33 **Amendments**

1. Any Party may propose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after the expiry of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 Any proposed amendment to this Agreement shall be transmitted by written communication to the Depositary along with a request for the convening of a meeting of the Parties to consider it. The Depositary shall circulate to all Parties such communication as well as all replies to the request received from Parties. Unless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circulation of the communication one half of the Parties object to the request, the Depositary shall convene a meeting of the Parties to consider the proposed amendment.

3. Subject to Article 34, any amendment to this Agreement shall only be adopted by consensus of the Parties present at the meeting at which it is proposed for adoption.

4. Subject to Article 34, any amendment adopted by the meeting of the Parties shall come into force among the Parties having ratified, accepted or approved it on the ninetieth day after the deposit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by two-thirds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based on the number of Parties on the date of adoption of the amendment. Thereafter the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for any other Party on the ninetieth day after that Party deposits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f the amendment.

5.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n instrument deposited by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not be counted as additional to those deposited by its Member States.

Article 34 **Annexes**

1. The Annexes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nd a reference to this Agreement shall constitute a reference to the Annexes.
2. An amendment to an Annex to this Agreement may be adopted by two-thirds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present at a meeting where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Annex is considered. Every effort shall however be made to reach agreement on any amendment to an Annex by way of consensus. An amendment to an Annex shall be incorporated in this Agreement and enter into force for those Parties that have expressed their acceptance from the date on which the Depositary receives notification of acceptance from one-third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based on the number of Parties on the date of adoption of the amendment. The amendment shall thereafter enter into force for each remaining Party upon receipt by the Depositary of its acceptance.

Article 35 **Withdrawal**

Any Party may withdraw from this Agreement at any time after the expiry of one year from the date upon which the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with respect to that Party, by giving written notice of such withdrawal to the Depositary. Withdrawal shall become effective one year after receipt of the notice of withdrawal by the Depositary.

Article 36 **The Depositary**

The Director-General of FAO shall be the Depositary of this Agreement. The Depositary shall:

- (a) transmit certified copies of this Agreement to each signatory and Party;
- (b) register this Agreement, upon its entry into force,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c) promptly inform each signatory and Party to this Agreement of all:

- (i) signatures and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and accession deposited under Articles 25, 26 and 27;
- (ii)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 (iii) proposals for amendment to this Agreement and their adoption and entry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 (iv) proposals for amendment to the Annexes and their adoption and entry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 and
- (v) withdrawals from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5.

Article 37
Authentic texts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of this Agreement are equally authentic.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being duly authorized,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Rome on this Twenty-second day of November, 2009.

ANNEX A

Information to be provided in advance by vessels requesting port entry

1. Intended port of call									
2. Port State									
3. Estimated date and time of arrival									
4. Purpose(s)									
5. Port and date of last port call									
6. Name of the vessel									
7. Flag State									
8. Type of vessel									
9.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10. Vessel contact information									
11. Vessel owner(s)									
12. Certificate of registry ID									
13. IMO ship ID, if available									
14. External ID, if available									
15. RFMO ID, if applicable									
16. VMS		No	Yes: National	Yes: RFMO(s)	Type:				
17. Vessel dimensions			Length	Beam	Draft				
18. Vessel master name and nationality									
19. Relevant fishing authorization(s)									
Identifier	Issued by	Validity	Fishing area(s)	Species	Gear				
20. Relevant transshipment authorization(s)									
Identifier		Issued by		Validity					
Identifier		Issued by		Validity					
21. Transshipment information concerning donor vessels									
Date	Location	Name	Flag State	ID number	Species	Product form	Catch area	Quantity	
22. Total catch onboard					23. Catch to be offloaded				
Species	Product form	Catch area	Quantity		Quantity				

ANNEX B**Port State inspection procedures**

Inspectors shall:

- a) verify, to the extent possible, that the vessel identification documentation onboard and information relating to the owner of the vessel is true, complete and correct, including through appropriate contacts with the flag State or international records of vessels if necessary;
- b) verify that the vessel's flag and markings (e.g. name, external registration number,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and other markings, main dimensions) are consistent with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documentation;
- c) verify, to the extent possible, that the authorizations for fishing and fishing related activities are true, complete, correct and consistent with the information provided in accordance with Annex A;
- d) review all other relevant documentation and records held onboard, including, to the extent possible, those in electronic format and vessel monitoring system (VMS) data from the flag State or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 Relevant documentation may include logbooks, catch, transshipment and trade documents, crew lists, stowage plans and drawings, descriptions of fish holds, and documents required pursuant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e) examine, to the extent possible, all relevant fishing gear onboard, including any gear stowed out of sight as well as related devices, and to the extent possible, verify that they are in conformity with the conditions of the authorizations. The fishing gear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also be checked to ensure that features such as the mesh and twine size, devices and attachments, dimensions and configuration of nets, pots, dredges, hook sizes and numbers are in conformity with applicable regulations and that the markings correspond to those authorized for the vessel;

- f) determine, to the extent possible, whether the fish on board was harvest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authorizations;
- g) examine the fish, including by sampling, to determine its quantity and composition. In doing so, inspectors may open containers where the fish has been pre-packed and move the catch or containers to ascertain the integrity of fish holds. Such examination may include inspections of product type and determination of nominal weight;
- h) evaluate whether there is clear evidence for believing that a vessel has engaged in IUU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in support of such fishing;
- i) provide the master of the vessel with the report containing the result of the inspection, including possible measures that could be taken, to be signed by the inspector and the master. The master's signature on the report shall serve only as acknowledgment of the receipt of a copy of the report. The master sha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add any comments or objection to the report, and, as appropriate, to contact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flag State in particular where the master has serious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the content of the report. A copy of the report shall be provided to the master; and
- j) arrange, where necessary and possible, for translation of relevant documentation.

ANNEX C

Report of the results of the inspection

1. Inspection report no		2. Port State	
3. Inspecting authority			
4. Name of principal inspector		ID	
5. Port of inspection			
6. Commencement of inspection	YYYY	MM	DD HH
7. Completion of inspection	YYYY	MM	DD HH
8. Advanced notification received	Yes		No
9. Purpose(s)	LAN	TRX	PRO OTH (specify)
10. Port and State and date of last port call			YYYY MM DD
11. Vessel name			
12. Flag State			
13. Type of vessel			
14.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15. Certificate of registry ID			
16. IMO ship ID, if available			
17. External ID, if available			
18. Port of registry			
19. Vessel owner(s)			
20. Vessel beneficial owner(s), if known and different from vessel owner			
21. Vessel operator(s), if different from vessel owner			
22. Vessel master name and nationality			
23. Fishing master name and nationality			
24. Vessel agent			
25. VMS	No	Yes: National	Yes: RFMOs Type:
26. Status in RFMO areas where fishing or fishing related activities have been undertaken, including any IUU vessel listing			
Vessel identifier	RFMO	Flag State status	Vessel on authorized vessel list
27. Relevant fishing authorization(s)			
Identifier	Issued by	Validity	Fishing area(s) Species Gear
28. Relevant transshipment authorization(s)			
Identifier		Issued by	Validity
Identifier		Issued by	Validity

29. Transshipment information concerning donor vessels						
<i>Name</i>	<i>Flag State</i>	<i>ID no.</i>	<i>Species</i>	<i>Product form</i>	<i>Catch area(s)</i>	<i>Quantity</i>
30. Evaluation of offloaded catch (quantity)						
<i>Species</i>	<i>Product form</i>	<i>Catch area(s)</i>	<i>Quantity declared</i>	<i>Quantity offloaded</i>	<i>Difference between quantity declared and quantity determined, if any</i>	
31. Catch retained onboard (quantity)						
<i>Species</i>	<i>Product form</i>	<i>Catch area(s)</i>	<i>Quantity declared</i>	<i>Quantity retained</i>	<i>Difference between quantity declared and quantity determined, if any</i>	
32. Examination of logbook(s) and other documentation				<i>Yes</i>	<i>No</i>	<i>Comments</i>
33. Compliance with applicable catch documentation scheme(s)				<i>Yes</i>	<i>No</i>	<i>Comments</i>
34. Compliance with applicable trade information scheme(s)				<i>Yes</i>	<i>No</i>	<i>Comments</i>
35. Type of gear used						
36. Gear examin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e) of Annex B				<i>Yes</i>	<i>No</i>	<i>Comments</i>
37. Findings by inspector(s)						
38. Apparent infringement(s) noted including reference to relevant legal instrument(s)						
39. Comments by the master						
40. Action taken						
41. Master's signature						
42. Inspector's signature						

ANNEX D

Information systems on port State measures

In implementing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 a) seek to establish computerized communi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 b) establish, to the extent possible, websites to publicize the list of ports design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and the actions take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 c) identify,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each inspection report by a unique reference number starting with 3-alpha code of the port State and identification of the issuing agency;
- d) utilize, to the extent possible, the international coding system below in Annexes A and C and translate any other coding system into the international system.

Countries/territories: ISO-3166 3-alpha Country Code

Species: ASFIS 3-alpha code (known as
FAO 3-alpha code)

Vessel types: ISSCFV code (known as FAO alpha
code)

Gear types: ISSCFG code (known as FAO alpha
code)

ANNEX E

Guidelines for the training of inspectors

Elements of a training programme for port State inspectors should include at least the following areas:

1. Ethics;
2. Health, safety and security issues;
3. Applicabl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reas of competence an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of relevant RFMOs, and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4. Collection, evaluation and preservation of evidence;
5. General inspection procedures such as report writing and interview techniques;
6. Analysis of information, such as logbooks, electronic documentation and vessel history (name, ownership and flag State), required for the validation of information given by the master of the vessel;
7. Vessel boarding and inspection, including hold inspections and calculation of vessel hold volumes;
8. Verification and validat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landings, transshipments, processing and fish remaining onboard, including utilizing conversion factors for the various species and products;
9. Identification of fish species, and the measurement of length and other biological parameters;
10. Identification of vessels and gear, and techniques for the inspection and measurement of gear;
11. Equipment and operation of VMS and other electronic tracking systems; and
12. Actions to be taken following an inspection.

CERTIFIED TRUE COPY of the English version of the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which was approved on 22 November 2009 at the Thirty-sixth Session of the FAO Conferen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7 of Article XIV of the FAO Constitution, this has been certified by the Director-General of the Organization and the Chairperson of the Conference.

부록 4. FAO어획증명제도 개선을 위한 자발적 지침(안)

APPENDIX D

DRAFT

Voluntary guidelines for catch documentation schemes

1. Preamble

1.1 The FAO Committee on Fisheries (COFI), at its thirty-first session in Rome, Italy, 9–13 June 2014, took note of paragraph 68 of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Sustainable Fisheries of 9 December 2013, and acknowledged the usefulness of catch documentation schemes (CDSs) in combating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The Committee recognized the benefit of elaborating guidelines and other relevant criteria for CDSs, including possible formats, based on principles of, *inter alia*, conformity with trade agreements, transparency, risk assessment, cost-benefit analysis and application of electronic data management.

1.2 COFI convened an expert consultation on the issue, taking into account CDSs already existing in some Member States, member organizations and in the context of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 with the aim of adopting the guidelines at its thirty-second session.

1.3 It is acknowledged that CDSs contribute to efforts to combat IUU fishing and provide an effective mechanism for identifying the origin of fish caught and reported in these schemes. Moreover, they assist in assuring that the fish were harves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relevant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2. Purpose and scope

2.1 The guidelines are voluntary. Their purpose is to provide guidance to state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GOs) and other stakeholders in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review, harmonization and enhancement of CDSs for wild capture fisheries.

2.2 The scope of these guidelines applies to all wild-capture fish and fishery products landed and/or traded by states and deemed to require a CDS. They provide special consideration of the needs of developing states and small-scale fisheries in this regard.

2.3 The guidelines provide guidance in CDS development, including, *inter alia*, principles, standards, functions, data requirements and formats. They have been informed by the current best practices of established CDSs.

3. Objective

3.1 The main objective of the guidelines is to set the basic principles, recommended standards and functions tha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review, harmonization and enhancement of CDSs by states and IGOs.

4. Definitions

4.1 **Catch documentation scheme** – a system that tracks and traces fish from the point of capture through unloading and throughout the supply chain. A CDS records and certifies information that identifies the origin of fish caught and ensures they were harves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relevant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The objective of the CDS is to combat IUU fishing by limiting access of IUU fish and fishery products to markets.

4.2 **Catch certificate** – an official document that records information on the harvesting and unloading of fish and includes the minimum data required by the guidelines.

4.3 **Trade certificate** – an official document that records information on the trading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It includes the minimum data required by the guidelines and may include details of processing.

4.4 **Fish and fishery products** – this term includes all species of living aquatic resources, whether processed or not.

4.5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 the activities set out in paragraph 3 of FAO's 2001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IUU fishing'.

4.6 **Landing** – the movement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in any form from a vessel to dockside in a port or free-trade zone, even if subsequently transferred to another vessel.

4.7 **Supply chain** – a sequence of processes involved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from the point of capture to the end market. It includes fishing vessels, processors and distributors.

4.8 **Traceability** – the ability to follow the movement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through specified stages of capture, processing and distribution.

4.9 **Trans-shipment** – the transfer of fish that have not previously been landed from one vessel directly to another, either at sea or in port. The offload or transfer in port of fish from a vessel to a container is a 'landing' within the definition in these guidelines.

4.10 **Unloading** – the movement of fish from a fishing vessel either by landing, transfer to tow or farm cages of live fish, or the trans-shipment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4.11 **Fishing vessel** – any vessel of any size used for, equipped for use for, or intended for use for the purposes of fishing or fishing-related activities, including support vessels, fish-processing vessels, vessels engaged in trans-shipment and carrier vessels equipped for the transportation of fishery products, except container vessels.

4.12 **Wild capture fisheries** – this term includes any fish caught for commercial purposes from marine or freshwater areas.

5. Principles

5.1 The guidelines are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 (a)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relevant international law;
- (b) not create unnecessary barriers to trade;
- (c) equivalence;
- (d) risk-based;
- (e) reliable, simple, clear and transparent;
- (f) electronic, if possible;
- (g) traceability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throughout the supply chain; and
- (h) close cooperation between all states involved in the supply chain from catch to market.

6.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6.1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set out in Section 5 should be guided by the following:

- (a) Any measure taken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established by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s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 (b) When measures are introduced, the least trade-restrictive measures should be chosen to achieve the CDS objective.
- (c) Measures should be non-discriminatory and ensure that domestic and imported fish are not treated differently in the interests of even-handedness. Diverse certification schemes can provide equivalent outcomes for the purpose of international trade.
- (d) The scope and requirements of a CDS should be proportionate to the risk that IUU fishing poses to stocks and legitimate economic activities and of the introduction of IUU fish and fishery products to markets.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should include systematic identification of all risks and the implementation of all necessary measures for limiting exposure to those risks. This includes activities such as collecting data and information, analysing and assessing risk, prescribing and taking action, including regular monitoring and review, and consideration of:

- (i) effectiveness of existing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measures;
- (ii) risk of IUU activities by vessels and by area, and of the introduction of IUU fish and fishery products into the supply chain from catch to market;
- (iii) risk of IUU activity by vessels not operating under effective flag-state control;
- (iv) risk that the vessels in question are flying the flag of a state that has not implemented applicable international obligations.

Consideration is also needed of the impact of IUU fishing on:

- (i) biological status of the fish stock, in particular if overfished or in danger of being overfished;
- (ii) effectivenes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 (iii) fishers' incomes, livelihoods and markets.

Based on this risk assessment process, priority should be given to situations in which implementation of a CDS is deemed an effective means of combating IUU fishing. In particular, CDS should be considered in high-risk fisheries.

- (e) Catch certificates should only contain verifiable information that is relevant, necessary and readily available. The certificate should be user-friendly, simple and clear so as to facilitate the inclusion of correct information in the document. A proposed measure should be notified, and a reasonable time should be allowed for comments before the measure is adopted. Adopted measures should be made available publicly.
- (f) Electronic systems and formats should be used to reduce the risk of falsification, facilitate documentation flow and provide greater flexibility in information requirements.
- (g) CDSs should enable fish and fishery products to be traced from catch to market.
- (h) CDSs are most effective when states involved in the supply chain cooperate in the scheme. States should seek wide multilateral engagement in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bearing in mind their obligations to cooperate under international agreements.

7. Special requirements of developing states

7.1 The capacity of developing countries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of these guidelin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by other countries.

7.2 In this sense – and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guidelines and support their effective implementation, especially regarding the electronic issuance of catch documentation – countries,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ether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and financial institutions are encouraged (individually or through coordination) to provide assistance and capacity-building to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technology transfer and training).

8. CDS recommended standards and functions

- **Definition of CDS objective**

A CDS should have a clear objective, enabling determination of the functions required. It should be designed to meet its objective and minimize the burden on users.

- **Definition of traceability standard**

A CDS should define the standard of traceability required to meet its objective. The traceability standard should define which segments of the supply chain are covered and to what level of detail.

- **Specified MCS controls**

Vessels participating in a CDS should be authorized/licensed by the flag state, and coastal state if applicable. A CDS should be supported by the use of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MCS) tools and other available information, including, *inter alia*, logbooks, vessel monitoring systems, observer data, etc.

- **e-CDS**

CDSs should be designed as centralized electronic systems (e-CDSs). The e-CDS should serve as the point of generation, issuance, validation and verification of all catch and trade certificates and should function as the repository of CDS data.

e-CDSs should minimize the burden on users throughout the supply chain. They require development of secure user access.

- **Data exchange and standards**

A CDS should adhere to global standards of information exchange and data management. Where participating states develop independent e-CDS components, they should be designed to ensure interoperability and be based on agree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formats.

- **Data input and validation**

A CDS should define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r data input and validation. The private sector should initiate CDS certificates by supplying all relevant data, validat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CAs), thus eliminating as far as possible the use of paper and double handling and rekeying of data.

- **Access control and defined user roles**

Access to an e-CDS should be defined and controlled through a hierarchical system of user logins and passwords that determine which parts, functions and levels of the system individual users or users' groups may access.

- **e-CDS functions and functionalities**

An e-CDS should provide functionality that allows users to interact with it through a flexible and user-friendly interface. Such functions may include, among others, routines for: recalling and rectifying certificates, printing out certificates physically, uploading scanned documentation (e.g. commercial invoices) along with data submission, or allowing private- and public-sector users to query and analyse those data accessible to them.

- **Timing of certificate issuance**

A CDS should clearly define at what points in the supply chain the initiation of certificates should be triggered. The basic principle that no catch must move to the next step in the supply chain without being covered by a certificate ought to apply as far as practically feasible, so as to minimize gaps and avenues of fraud in the system.

In general terms, and without prejudice to differences in supply chain dynamics in diverse fisheries, the adequate point in time to create the catch certificate is before unloading of the catch from the fishing vessel, while, in trade, the adequate point in time to create a trade certificate is when a consignment is being prepared for shipment and may still be inspected.

- **Document numbering**

A CDS should have system-generated, unique document numbering.

- **Competent authorities, validation and validation rules**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validation of catch certificates should remain with the flag state in all cases.

In the case of trade certificates, validation should be limited to CAs of the states that are part of the supply chain (flag, port, coastal, processing or marketing).

Cooperation mechanisms should be implemented among states to overcome problems at the time of issuance of the certificate, such as missing information, or to enhance guarantees in connection with legal status or the provenance of fish.

Supply chain CAs should be formally notified to the operator of the CDS system, and contact details should be publicly available.

- **Estimated and verified weights**

A CDS should provide processes covering unloadings in those fisheries in which they are made on the basis of estimated weights (e.g. tuna purse-seine fisheries). In such fisheries, the documentation system should provide mechanisms for following the unloaded batches – including through potential splits – all the way to the point in the supply chain in which the verified weights may be established, logged, and the final catch certificate issued and validated on the basis of verified weights.

- **Document system**

A CDS should have catch certificates and trade certificates that establish a link between the products recorded in the certificates. Other documentation may supplement certificates throughout the supply chain to ensure traceability (e.g. transport documents). Specific formats may be designed to accommodate small-scale fisheries.

- **Document system and conformance with supply chain mapping**

Before designing a CDS for a particular fishery – or set of fisheries – an exercise in supply chain mapping is strongly recommended to appraise existing supply chain dynamics. This map provides guidance on which supply chain events – or combination of events – the document system must accommodate. Events that add complexity to supply chains, and that may require special rules and mechanisms for data logging and validation, include trans-shipments, serial trans-shipments, split landings, split transfers, landings of fish on the basis of estimated weights only, grouping of batches, etc.

The CDS system must effectively accommodate current and future likely supply chain scenarios.

- **Certificate models**

Printed versions of catch and trade certificates should be based on a standard model that conforms to international standards for document formats.

- **Oversight (national, RFMO)**

A CDS requires oversight, ensuring that data are monitored and discrepancies detected. The primary onus of oversight should rest at the national level, in line with the responsibilities of flag, coastal, port, processing and market states, as defined in the CDS.

As applicable, a second level of oversight may apply at the regional level, monitoring the consistency of data flows throughout the supply chain. Data both accessed and used – and possibly published at state and regional levels to inform oversight exercises – must respect the rules of data confidentiality.

The CDS should provide guidance to states, RFMOs and/or other stakeholders on what measures of enforcement and sanctioning could be applied.

The CA should not permit entry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covered by a CDS into the territory of any state without a certificate validated by the relevant CA of the supplying state.

- **Data confidentiality and protection rules**

A CDS requires standards of confidentiality and protection of data. Data of commercial and/or national sensitivity should be provided the highest level of protection under the applicable data protection rules, and mechanisms should be defined to provide access to protected data in aggregated forms. The CDS should be designed to prevent unauthorized access and protect against data loss.

- **Engagement of states not participating in a CDS**

A CDS should include a process for identifying states not participating in the CDS, but engaged in the harvest and/or trade of fish to which the CDS applies. It should promote cooperation with the non-participating states in voluntary implementation of the CDS – involving formal dialogue, information-sharing arrangements and capacity-building initiatives. The process of voluntary implementation of a CDS by a non-participating state should be incremental, cost-effective and supported by those states that do implement the CDS.

- **Exemptions (product types)**

A CDS should define what types of products are exempted from the CDS.

- **Coverage (species)**

A CDS should specify which fish species it covers, acknowledging that a CDS may cover multiple species.

- **Mass balance and reconciliation**

A CDS may include monitoring of mass balance. If mass balance reconciliation indicates inconsistencies in the supply chain, the oversight and follow-up mechanisms referred to above should be triggered to address potential compliance issues.

- **Yield-factor monitoring and definition of weights**

In order to enable mass balance reconciliation, yield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A CDS should define what units of measurement and product weights are to be used in certificates throughout the supply chain.

- **Future technologies**

Each CDS should consider the application of future technologies.

- **User manual/training**

User manuals must describe the operation of the CDS and, ideally, should be tailored to individual users' groups and written in the languages of those groups. Appropriate levels of training should be provided to users of the CDS.

- **Operative languages**

Du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operative languages necessary to the efficient and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CDS.

9. Data requirements/formats

9.1. A CDS should include, as a minimum, the following data elements:

Catch certificate

- Unique, secure document number
- Identity and contact details of issuing competent authority (e.g. name, address, phone, e-mail)
- Identity of fishing vessel (e.g. name, flag, registration number, unique vessel identifier, call sign)
- Fishing dates (from ... to)
- Description of fish (e.g. species, area caught, product form, weight [kg])
- Unloading details (e.g. port/location, trans-shipment)

Trade certificate

- Unique, secure document number
- Previous trade certificate number (if applicable)
- Originating catch certificate number
- Identity and contact details of issuing competent authority (e.g. name, address, telephone, e-mail)
- Identity and contact details of exporter (e.g. name, address, telephone, e-mail)
- Date of export
- Description of fishery products exported (e.g. species, product type, weight of fish before processing, processed weight exported [kg])
- Identity and contact details of importer (e.g. name, address, telephone, e-mail)
- Transport details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2015年 12月 29日 印刷

2015年 12月 31日 發行

편집겸
발행인 김 성 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26

전 화 051-797-4800 FAX : 051-797-481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비전테크시스템즈 Tel : 02-3432-7132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 - 0337

정가 15,000원

